세법연구 13 – 05

법인의 국제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주요국의 서식 비교 연구

2013. 9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혜 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유 현 영 공인회계사

최 정 욱 공인회계사

목 차

Ⅰ. 서 론 ····· 9

Ⅱ.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11

1. 세무신고서식 ····· 11

가. 세무신고서식의 종류 ····· 11

나.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 12

다.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납세순응 ····· 13

2.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14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15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17

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18

라.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20

3.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21

가. 국제거래명세서 ····· 21

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23

다.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24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25

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27

4. 특정외국법인(구, 조세피난처) 유보소득에 관한 자료 ····· 28

가. 서식 중 국외출자 명세서 ····· 29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등 ····· 30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31

5. 요약 ····· 32

Ⅲ. 주요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 35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정보 보고 현황 ····· 35
2. 미국 ····· 37
가. 국내회사의 해외투자 ····· 37
나.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44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59
3. 호주 ····· 62
가.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개요 ····· 63
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64
다.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65
라.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 74
마. 기타 서식 ····· 78
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81
4. 일본 ····· 82
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 대상금액 또는 개별 과세금액 계산 명세서 ····· 83
나.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85
5. 벨기에 ····· 86
가.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86
나. 조세피난처 거래 ····· 87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88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 89
1. 국제비교 ····· 89
가. 제출대상 ····· 89
나. 서식의 정보 ····· 93
다. 미제출에 대한 제재 ····· 97
2. 시사점 ····· 98
가. 서식의 통합 및 상세 작성지침 마련 ····· 98

나. 국제거래 명세서 ····· 99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100
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및 정보 ····· 101
마.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방안 ····· 102
바. 정보의 활용방안 ····· 104

참고문헌 ····· 107

[부록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 109

[부록 2] 미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 114

[부록 3] 호주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 129

표 목 차

〈표 Ⅱ-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관련 서식 ····· 26
〈표 Ⅱ-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서식 ····· 31
〈표 Ⅱ-3〉 우리나라의 국제거래서식 요약 ····· 32

〈표 Ⅲ-1〉 OECD 국가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보고 현황 요약 ····· 36
〈표 Ⅲ-2〉 제출의무자별 제5471호 서식 작성 ····· 39
〈표 Ⅲ-3〉 제5471호 서식의 세부항목 ····· 40
〈표 Ⅲ-4〉 제5472호 서식의 세부항목 ····· 45
〈표 Ⅲ-5〉 제8858호 서식의 세부항목 ····· 48
〈표 Ⅲ-6〉 제출의무자별 제8865호 서식 작성 ····· 52
〈표 Ⅲ-7〉 제8865호 서식의 세부항목 ····· 53
〈표 Ⅲ-8〉 제1120호 서식의 세부항목 ····· 58
〈표 Ⅲ-9〉 IDS Section A의 세부항목 ····· 67
〈표 Ⅲ-10〉 IDS Section B의 세부항목 ····· 73
〈표 Ⅲ-11〉 IDS Section C의 세부항목 ····· 74
〈표 Ⅲ-12〉 IDS Section D의 세부항목 ····· 78
〈표 Ⅲ-13〉 IDS Section E의 세부항목 ····· 80
〈표 Ⅲ-14〉 지연신고 가산세 ····· 82

〈표 Ⅳ-1〉 제출대상 서식의 종류 ····· 90
〈표 Ⅳ-2〉 제출의무자의 국제비교 ····· 92
〈표 Ⅳ-3〉 보고대상 국제거래 유형 ····· 94
〈표 Ⅳ-4〉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비교 ····· 95
〈표 Ⅳ-5〉 제출대상 명세서상 재무정보 국제비교 ····· 96

〈표 Ⅳ-6〉 주요국의 서식 관련 가산세 ····· 98

〈부표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 109

Ⅰ. 서 론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법인의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파악하며, 신고과정에서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함

□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서식은 과세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됨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확보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세탈루 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선택적으로 세무조사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은 세원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해외투자나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세무신고 서식 등을 통해 국제거래 정보를 확인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국제거래 등에 오류가 있거나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신고 절차를 통해 과세당국이 정확하고 다양한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편,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서식의 제출대상 확대와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함

□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세원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세무신고 서식에 포함시켜 관련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과세당국이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

○ 단, 비거주자 원천징수, 국가 간 정보교환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과 개인의 국제거래 정보수집과 관련된 정보보고 서식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사항도 추가 검토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제출 강화방안도 함께 살펴봄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한 제Ⅱ장부터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제시한 제Ⅳ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세무신고서식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보고 서식을 조사함

○ 제Ⅲ장에서는 OECD 국가의 정보수집 현황을 조사한 후 관련 서식을 두고 있는 주요 4국가(미국, 호주, 일본과 벨기에)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보고 서식과 자료수집 방안을 상세히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서식 제출대상, 제출정보와 제출유인 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내국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법정 신고서식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액을 확정함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1)]

□ 우선 세무신고서식의 일반적인 종류와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서식을 조사함

○ 세무신고 서식은 세금을 계산하는 서식,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신청에 관한 서식, 정보를 보고하는 서식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보고서는 국제거래 등과 관련하여 정보를 보고하는 서식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세무신고서식

가. 세무신고서식의 종류

□ 세무신고서식은 크게 세무조정항목의 산출과 관련된 서식,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한 신청서식과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식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무조정항목의 산출과 관련된 서식을 통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세액계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1) 「법인세법」 제60조

○ 그 예로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접대비조정명세서(갑),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등과 같은 서식이 있으며 세무신고서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이러한 신고서식을 통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세무조정항목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세금계산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신청서식은 납세자가 조세혜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으로 과세당국은 이 서식을 통해 비과세 및 감면 등의 적용사실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그 예로 세액공제신청서, 합병특례과세신청서, 물납신청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등이 있음

○ 이러한 서식에는 법, 시행령에서 사전 승인이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가 많음

□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식은 과세당국이 궁극적으로 향후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세무조정항목이나 세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임

○ 이러한 서식의 예는 각 소득의 지급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등이 있음

○ 국제거래 등의 경우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식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가 있기 전까지 납세자의 세원과 과세표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은 소득의 종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 수 있으

며, 신고과정에서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됨

□ 그러나 최근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계산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비교해 관련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세액계산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거래를 알지 못해 세원 포착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그 결과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검증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거주국, 거주도시 및 경영상황, 거래규모나 재무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국제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거래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함

다.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납세순응[2)]

□ 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보고할 때 얻는 이익과 탈세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을 비교하여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결정함

□ 정부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제재나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세액계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보고 서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

2) 현진권, 「세무신고서식과 납세순응」, 『국세월보』 제476호, 2006.10. 참고

□ 이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서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나 성실한 보고에 대한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성실신고 의도를 가진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신고서식으로 인해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서식은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간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김유찬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서식의 종류는 많고 한 개의 서식에 담긴 정보의 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지적하면서 서식의 통합 및 단순화를 주장한 바 있음[3)]

○ 또한 납세자가 세무신고서식을 통해 제출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적극 활용해 중복되는 소명자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함[4)]

2.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기업의 재무상황과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거래 · 행위를 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나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 확장 ·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임

□ 과세당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3) 김유찬 · 정지선,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세연구』 제9-2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4) 김유찬 · 정지선,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세연구』 제9-2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까지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출하는 서식은 투자 상황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81호 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별지 제83호 서식)임[5)]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만 제출

○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만 제출

□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개별 거래내역의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함

○ 내국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손실거래 및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와의 손실거래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출하게 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손실위장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와 부당한 비용공제 등의 역외탈세 가능성을 밝히고자 함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모법인인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과 각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 및 투자내역을 제출함

---

5)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의2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

□ 내국인이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국가(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했을 때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해서 제출현황을 기재함

□ 서식의 기재내용: 전기 말 가동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의 신설 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청산(지분양도) 법인 수, 제출대상 법인 수, 제출법인수와 미제출 법인 수

2) 해외현지법인

□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 현지법인별로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과 투자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가)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해당 현지법인이 국내모법인의 자회사인지 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인지 체크함

□ 서식의 기재내용: 해외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투자일자, 현지납세자번호, 해외현지법인소재지, 업종 및 업종코드, 직원 수 및 모법인 파견직원 수, 현지법인 전화번호를 기재함

○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코드를 기재함

나)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과 청산 또는 지분양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과 관련된 사항: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거주지국, 출자

내역, 대부투자내역을 기재함

○ 각 주주별 출자내역: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 각 주주별 대부투자내역: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국가와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청산 또는 지분양도 여부와 관련된 사항: 청산 또는 지분양도 일자, 청산유형, 회수금액, 주거래은행 신고여부를 기재함

3) 제출기한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다만,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6)]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 해외현지법인별 재무제표를 제출함

□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제출 현지법인 수와 미제출 현지법인 수를 모두 기재함

---

6)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에 관한 서식 기재내용: 해외현지법인별로 해외현지법인명 및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경우 적용환율을 기재함

○ 국내기업의 요약대차대조표 서식과 유사하나 요약대차대조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여금, 매입채무, 차입금을 별도로 기재해야 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 국내기업의 요약손익계산서 서식과 유사하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과 매입, 모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별도로 기재하는 점이 특이사항임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다만,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7)]

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이 서식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해외영업소 설치명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 제출영업소 수와 미제출 영업소 수를 보여줌

○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에는 전기말 가동 영업소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설립 영업소 수, 당기 중 폐쇄(철수)영업소 수를 포함하고 있음

---

7)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

2) 해외영업소 설치명세

□ 해외영업소 기본사항, 해외지점의 요약대차대조표와 요약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경영상황과 폐업(철수) 여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가) 해외영업소 기본사항

□ 해외영업소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해외영업소 소재지, 현지납세자번호, 설립일자, 설립형태(지점 또는 사무소), 업종(업종코드), 직원 및 본점파견 직원 수에 관한 정보를 기입함

나) 해외지점 경영상황

□ 해외영업소가 지점형태인 경우에만 이 부분을 기입함

□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와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함
○ 모두 적용환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요약대차대조표는 자산총계, 토지 및 건축물,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기타,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본점지원경비 포함)에 관한 내용만 요구함

□ 요약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소득세와 당기순손익에 관한 내용만 기재를 요구함

다) 폐업(철수) 여부

□ 폐업 또는 철수 일자와 이로 인한 회수금액을 기재함

3) 제출기한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다만,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8)]

라.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납세자가 법인세 자진납부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음

○ 단, 2013년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가 없어도 법인세 자진납부신고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함

□ 다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9)] 없이 법정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 경우 과세당국은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함

○ 2013년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과태로 부과대상을 현행 50% 이상 직 · 간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10% 이상 직 · 간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함

---

8)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

9) 정당한 사유란 화재 · 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자료의 수집 ·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앞에 열거한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3.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법정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국제거래 등에 대한 정보보고 서식은 국제거래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갑)), 지급보증용역거래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을)),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별지 제8호의2 서식)가 있음

□ 한편, 무형자산(별지 제1호서식), 용역거래(별지 제2호서식)와 재화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별지 제3호서식)가 별도로 존재함

가. 국제거래명세서

1) 제출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제출서식

□ 이 서식은 제출인의 인적사항,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함

□ 제출인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 상호 및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업종 및 업종코드,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

□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에 관한 내용: 거래상대방의 법인명(상호), 현지기업 고유번호, 소재국가, 설립일, 현지 납세자번호, 소재지(주소), 주업종 및 업종코드, 제출인과의 관계, 사업연도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에 관한 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차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함

○ 재화거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로 구분함

–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 및 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 매입거래: 재고자산(상품 및 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 용역거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로 구분함

– 매출거래: 지급보증, 그 밖의 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 매입거래: 지급보증, 그 밖의 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 대차거래: 사업연도말 차입금 및 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사업연도말 대여금 및 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자본거래: 국외특수관계인 주식의 기초 소유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의 증·감 현황, 기말 주식 소유현황을 보여줌

– 기초, 기중 변동, 기말의 경우 각각 주식 수, 취득가액(기중 양도시 양도가액 표시)을 표시함

○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명세: 취득(증자)일, 취득(증자)방법, 취득(증자) 주식 수, 취득(증자)가액, 양도인(성명, 소재국가, 특수관계 유무) 기재

○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명세: 양도(감자)일, 양도(감자)방법, 양도(감자) 주식 수, 양도(감자)가액, 양수인(성명, 소재국가, 특수관계 유무) 기재

3) 제출기한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로서 과세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1) 제출대상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거나(매출거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매입거래) 작성하며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함

2) 제출서식

□ 특수관계인명과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함

□ 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 대해 보증(차입) 내역과 지급보증 정상가격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 보증(차입) 거래 내역: 채권자, 소재국가, 통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상환)일, 이자율

○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요율, 금액

3) 제출기한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세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다.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1) 제출대상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증명할 목적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함

□ 단,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하이거나 중복된 다른 서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서식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첫째,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서식 제출이 면제됨

○ 둘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서식 제출이 면제됨

2) 제출서식

□ 국외특수관계인의 명칭, 소재지(주소),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특수관계인의 구분, 주식 등 소유비율의 기본정보를 기재함

○ 특수관계인은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점 · 지점, 해외 타 지점으로 구분함

- 피지배: 국외특수관계인이 납세의무자(국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 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 자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납세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
- 실질지배: 납세의무자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와 어느 한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어느 한

쪽의 관계에 있는 자

- 본점·지점, 해외 타 지점:「법인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주식 등 소유비율에는 직접소유(피소유), 간접소유(피소유) 비율과 총소유(피소유) 비율을 기재함

- 소유란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 피소유란 국외특수관계인이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익 정보가 포함된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함

3) 제출기한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세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1) 제출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거주자인 납세자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2) 제출서식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무형자산, 용역거래와 기타 재화거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서식을 정하고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에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대상거래, 거래금액 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거래가격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기재함

〈표 Ⅱ-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관련 서식

<table>
<tr><th>구분</th><th>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th><th>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th><th>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th></tr>
<tr><td>번호</td><td>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서식</td><td>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의2서식</td><td>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의3서식</td></tr>
<tr><td>제출대상</td><td colspan="3">1) 배제대상
• 전체 재화거래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td></tr>
<tr><td>국외특수관계인</td><td colspan="3">법인명(상호), 소재 국가, 대표자(성명), 업종, 신고인과의 관계(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점 · 지점 등), 소재지(주소)</td></tr>
<tr><td>대상거래</td><td>1)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2) 무형자산의 명칭
3) 사용허락 거래
• 사용허락 계약일
• 사용허락 기간
4) 매매거래
• 매매거래일
• 매매거래 금액</td><td>1) 용역거래의 종류: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인지 기재
2) 주된 사업활동
3) 제공용역
• 특정 용역: 해당 거주자나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
• 공통 용역: 해당 거주자나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td><td>대상거래</td></tr>
</table>

〈표 Ⅱ-1〉의 계속

구분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1) 사용허락 거래 • 일시불 사용료 • 사용료율 • 사용료율의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 정상각격 산출방법 2) 매매거래 •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1) 정상가격 산출방법 2)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액 • 직접청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대가를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해서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 기재 • 간접청구: 용역을 하나 이상의 수혜자를 위해 제공할 때 용역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 기재 3) 간접청구 배부기준: 하나 이상인 경우 주요 배부기준 기재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 방법의 선택 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제출기한

□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단,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함

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납세자가 법인세 자진납부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음

□ 그러나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임

○ 이 자료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이 포함됨

4. 특정외국법인(구, 조세피난처) 유보소득에 관한 자료

□ 「국조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관한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임

○ 이 경우 출자한 내국인이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임

○ 단,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재무제표와 유보소득의 산출근거 등에 관한 총 8개의 서식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식이 포함되어 있음

○ 서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병)까지 특정 외국법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함

□ 서식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등의 과태료 규정은 없음

○ 납세자가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담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에 내국인이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음

가. 서식 중 국외출자 명세서

1) 제출대상

□ 「국조법」 제30조에 따른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 국외출자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 경우 「국조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부터 제20조까지(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만 해당 서식을 제출함

□ 여기서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이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이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결손(缺損)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봄)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합계의 15% 이하가 되는지에 따라 결정됨

2) 제출서식

□ 직접 출자법인(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외국에 직접 출자한 경우)과 간접 출자법인(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

□ 즉, 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대표자의 성명과 국적, 소재지의 국가와 도시, 설립일, 업종, 종업원 수(파견 및 현지 직원 수 구분기재), 통화종류, 수입금액, 자본금 변동사항(기초, 증감, 사유, 기말), 출자비율(기초 및 기말), 배당금, 유보잉여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3) 제출기한

□ 법인세 확정신고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등

□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함

□ 이와 관련해서 7개의 서식을 작성해야 함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 명세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을 작성함
- ○ 그 밖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등이 있으나 이는 세액계산과 관련된 서식이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

□ 서식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외국법인의 일반정보(법인명, 업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재지), 자본금 명세,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 판정을 위해 최근 3년간 특정외국법인의 조세부담과 업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임

〈표 Ⅱ-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서식

구분	내용	세부내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 특정외국법인	○ 법인명, 업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재지
	○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 자본금, 발행주식 수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 주식소유(내국인과 비거주자의 직·간접 비율)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관계가 있는지 체크
	○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등	○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평균 조세부담비율, 세전당기순이익, 납부세액, 적립금 등 ○ 업종 및 주된 사업기준 ○ 해외 지주회사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 특정외국법인	○ 법인명, 업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재지
	○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	○ 최근 3년 동안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 납부세액,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감소세액을 기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병)-특정외국법인별 작성	○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 고정시설의 종류 ○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 및 종목 ○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 법에서 정한 사업의 거래기준과 특수관계인과 거래기준	○ 거래기준: 사업의 종류 별 거래금액, 총거래금액 대비 비율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 거래의 종류, 거래금액의 합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과 거래비율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 총수입금액과 비율
	○ 해외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관한 정보	○ 해외지주회사: 법인명, 업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재지 ○ 자회사 현황: 법인명, 소재지, 지주회사 소유비율, 취득일, 배당기준일, 보유개월 수, 배당지급액 ○ 자회사 요건과 지주회사 요건에 관한 사항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서식의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나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없음

5. 요약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거래에 관한 서식의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과 가산세를 요약함

〈표 Ⅱ-3〉 우리나라의 국제거래서식 요약

구분	서식명	근거법령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	가산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법인세법」 제121조의2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 대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나 행위가 있는 내국법인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법인세 신고일	없음 ** 개정안에 1천만원 가산세 부과하는 방안 발표
					제출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단,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내국법인에만 보완요청 가능 ** 개정안에서 50%를 10% 변경하는 방안 포함	미제출 및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세법」 제121조의2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법인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 매입과 모회사 파견 직원 급여를 별도 개재	상동	상동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법인세법」 제121조의2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급	○해외영업소 일반사항 ○해외지점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폐업 및 철수여부	상동	상동
	(개정안)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추가 예정	미정.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확인가능	미정.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확인가능	(개정안) 법인세 신고일. 피투자회사 지분의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내국법인에만 적용	(개정안) 미제출 및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표 Ⅱ-3〉의 계속

구분	서식명	근거법령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	가산세
국내 기업의 국제 거래	국제 거래 명세서	「국조법」 제11조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재화거래(매출 및 매입), 용역거래(매출 및 매입), 대차거래, 자본거래로 구분해서 기재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법인세 신고일	없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	미제출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지급 보증 용역 거래 명세서	「국조법」 제11조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자	○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 대한 보증(차입)내역과 지급보증 정상가격	상동	상동
	국외 특수 관계자의 요약 손익 계산서	「국조법」 제11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자.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등 ○주식소유 비율 ○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내역	상동	상동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	「국조령」 제7조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대상거래, 정상가격산출방법, 해당 방법의 선택이유를 기재하며 거래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서식으로 구분 1) 무형자산 서식 ○무형자산 사용허락 거래 ○무형자산 매매거래 2) 용역거래 서식 ○제공용역이 특정용역인지 공통용역인지 구분 ○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에 대한 내용 포함 3) 기타거래 서식	상동	상동

〈표 Ⅱ-3〉의 계속

구분	서식명	근거법령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	가산세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령」 제37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	해외현지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종업원수, 통화종류, 수입금액, 자본금 변동사항, 출자비율, 배당금과 유보잉여금을 기재	법인세 신고일	없음
	기타	「국조령」 제37조		대상 외국기업의 자본금,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조세부당액, 고정시설의 종류 등 실질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 해외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정보	법인세 신고일	없음

Ⅲ. 주요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정보 보고 현황[10)]

□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OECD 국가의 이전가격과 특수관계인에 관한 정보의 문서화, 문서의 제출기한, 세무신고 시 보고하는 국제거래 서식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검토함[11)]

□ OECD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는 독립적인 국제거래 서식을 두지 않고 이전가격(국제거래 포함)의 문서화[12)] 의무 강화를 통해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문서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반면, 호주,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의 국가는 문서화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서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경우 국제거래와 관련된 문서화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 서식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문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서식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10) Deloitte, *2012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2012. 참조

11)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참조

12) 본 보고서에서 문서화란 용어는 기업이 자신의 이전가격 및 이전가격산정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문서화 대상에 정상가격산정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거래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됨

○ 벨기에의 경우도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으나 조세피난처 서식의 미제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함

○ 한편, 국제거래 서식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적시성 있는 문서화에 실패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국가로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 9개 국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은 세무조사 전에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국제거래 서식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밖에 칠레,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문서화와 국제거래 서식 제출을 모두 요구하지 않음

〈표 Ⅲ-1〉 OECD 국가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보고 현황 요약

구분	문서화 요구 정도		
	가산세 부과(강제)	문서화한 경우 혜택 제공(자발적)	제재나 혜택 없음(권장)
문서화 및 국제거래서식 제출 요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미국	벨기에, 슬로바키아
문서화만 요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국제거래서식 제출만 요구	일본		
문서화 및 서식제출 미요구	칠레,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주: 1. 세무조사 이전에 문서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문서화 요구가 있다고 보았으며, 일본과 같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화 의무가 없다고 표시함
2. 문서화한 경우 제공하는 혜택은 사전 문서화가 인정될 때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임
3. 문서화나 국제거래 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표시된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제도의 적용대상자, 정확성과 정교함의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4. 벨기에는 조세피난처 송금액에 대한 서식을 제출함

자료: Deloitte, *2012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2012. 참조

□ 위 정보를 기초로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보고서식을 작성하는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과 벨기에의 국제거래 정보보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함

○ 벨기에는 국제거래의 제출대상을 조세피난처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여서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함

2. 미국

□ 미국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의 미제출이나 불완전한 신고에 대해 신고기한 경과 즉시 가산세를 부과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서식이나 신고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그 대신 이전가격에 관한 문서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가산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전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와 같은 별도의 서식이 있지 않으며 제5471호에서 CFC에 대한 간단한 재무정보를 기재함

가. 국내회사의 해외투자

1) 제5471호 서식 특정 외국기업과 관련된 미국인의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 목적: 내국세법 제6038조 및 제6046조에 따라 특정 외국회사의 주주, 이사이거나 임원

인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에게 외국회사에 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제출의무자: 네 가지 중 한 가지 분류에 포함되는 모든 미국인은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A: 요건을 만족한 미국인[13]이 소유한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의 이사나 임원인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U.S. citizen or resident)

– 여기서 요건을 만족한 미국인이란 외국기업 주식의 10% 이상 주식소유요건[14]을 만족한 자나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B: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10%의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

– 기존에 외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자가 10%의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미국 주주로 간주되는 자

– 미국인이 되는 시점에 10%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게 된 자

– 10% 주식소유요건 미만으로 지분을 낮추기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미국인

○ C: 외국법인의 회계기간 동안 적어도 연속되는 30일 동안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은 미국인

○ D: 과세연도 중 적어도 연속되는 30일 동안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15]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주주

---

13)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미국인(U.S. person)이란 i)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 ii) 국내 파트너십 iii) 외국 신탁(estate or turst)이 아닌 신탁을 의미함

14)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주식소유요건(stock ownership requirement)이란 외국법인 주식가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의 1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것을 의미함

15)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의결권의 50%나 회사 주식 가치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국 주주가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함

□ 제5471호 서식은 위 제출의무자별로 작성할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표 Ⅲ-2〉와 같음

○ 제출의무자를 네 부류로 세분화하고 각 대상자가 입력할 정보를 구분하고 있어 과세당국은 필요한 정보만 취합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서식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표 Ⅲ-2〉 제출의무자별 제5471호 서식 작성

구분	A	B	C	D
공통부분	○	○	○	○
Schedule A	–	○	○	–
Schedule B	–	○	○	–
Schedule C, E, F	–	○	○	–
Schedule G	○	○	○	○
Schedule H	–	–	○	○
Schedule I	–	–	○	○
Schedule J	–	–	○	○
Schedule M	–	–	○	–
Schedule O, Part 1	○	–	–	–
Schedule O, Part 2	–	○	–	–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2012.12.

□ 보고방법: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해서 신고기한까지 제출함

□ 제5471호 서식은 크게 11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아래 표에서 설명함

○ 외국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외국법인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모든 제출의무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Schedule G는 여러 가지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형태임

○ 외국법인의 정보가 있는 구체적인 위치와 연락처(외국법인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필요할 때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외국법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연도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표 Ⅲ-3〉 제5471호 서식의 세부항목

구분		내용
공통부분	1. 외국법인의 과세연도	-
	2. 제출의무자에 관한 사항	○ 이름 ○ 주소 ○ 과세연도 ○ 사회보장번호 ○ 제출의무자 분류(4가지 중 해당되는 곳) ○ 연도 말 외국법인 주식 소유지분 ○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주주 · 이사 · 임원 중 해당되는 지위
	3. 외국법인에 관한 기본 정보	○ 이름 ○ (해당되는 경우) 외국법인 고용주의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참조번호(Reference Id number): 서식을 제출하는 자가 부여한 번호이며, 매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야 함. 이는 해당 외국기업과 거래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됨 ○ 설립국가, 설립일자 ○ 주된 사업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 ○ 사업활동 코드(서식소개에 각 활동별 코드가 안내되어 있음) ○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
	4. 외국법인의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	○ 미국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인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미국 소득세의 신고대상인 경우: 과세표준과 미국에 납부한 세금 ○ 설립국가에서 외국기업의 법정 대리인이나 거주자인 대리인의 이름이나 주소 ○ 외국기업의 장부와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이름과 위치, 장부와 거래기록의 보관 장소

〈표 Ⅲ-3〉의 계속

구분		내용
Schedule A	외국법인의 주식에 관한 사항	○ 각 주식을 종류별로 간단히 설명 ○ 발행주식 수와 유통주식 수: 회계연도 시작일과 마지막 날의 수를 기재함
Schedule B	외국법인의 미국인 주주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각 주식 종류별 설명 ○ 회계연도 시작일의 보유주식 수 ○ 회계연도 종료일의 보유주식 수 ○ 피지배외국법인의 미배당 이익을 subpart F 이익이라 하며, 이러한 subpart F 이익 중 미국인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
Schedule C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1. 수익	순매출(= 총매출 - 매출차감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배당, 이자, 총임대수익, 총 로열티 및 라이센스 수수료수입, 자본이득, 기타 수익
	2. 공제	보상(compensation), 임차료, 로열티 및 라이센스 지급액,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감모비용(depletion), 세금, 기타 공제액
	3. 순이익	특별손익, 전기오류수정액, 임시조정액, 부당이득세(excess profits tax)나 전시이익(war profit)을 차감하기 전 이익
Schedule E	순이익의 소유자가 속한 국가	순이익, 전시이익, 부당이득세 납부액이나 부당이득세 추정액의 국가명이나 미국에 속한 금액인지 여부
Schedule F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1. 자산	현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세부내역 첨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대여금, 자회사 투자(세부내역 첨부), 기타 투자자산(세부내역 첨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 감모자산 및 감가상각누적액, 토지, 무형자산, 영업권, 창립비, 특허 · 트레이드마크 및 다른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자산(세부내역 첨부)
	2. 부채 및 자본	○ 부채: 매입채무, 기타 유동부채(세부내역 첨부), 주주 및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 기타 고정부채(세부내역 첨부) ○ 자본: 자본금(보통주 및 우선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사주처분원가

〈표 Ⅲ-3〉의 계속

구분		내용
Schedule G	과세연도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질문 8가지: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체크	1) 과세연도 중 외국법인이 해외 파트너십의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였는가? 2) 외국법인이 신탁 지분을 소유하였는가? 3) 외국법인이 부인 가능 법인체인 다른 외국법인을 소유하고 있는가?: 부인 가능 법인체인 다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8858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 4) 외국법인이 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는가? 5) 외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 중 비용분담약정에 처음 참여하였는가? 6) 외국법인이 법에서 정한 보고대상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가? 7) 외국법인이 법률에 따른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였는가? 8) 외국법인이 내국세법 제909조가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을 지급했거나 지급예상액이 있는가?
Schedule H	이익잉여금과 이익에 관한 사항	○ 당기 외국 장부에 계상된 순손익 ○ 미국 재무제표 및 미국 세무회계 기준에 맞게 조정한 해외 이익잉여금 및 순손익 – 자본이득 또는 손실 – 감가상각비, 감모비용 – 투자공제(investment or incentive allowance) – 법정준비금 적립 – 재고자산 조정, 세금, 기타(세부내역 첨부) ○ 총 가산액(total net additions) ○ 총 차감액(total net subtractions) ○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
Schedule I	외국법인의 주주가 얻은 수익 요약	○ 주주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고 주주별로 8가지 정보를 입력 [8가지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기재하는 별도의 작업시트(worksheet) 존재] – Subpart F 수입 – 미국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의 합계 – 수입배당금 – 팩도링이익 등에 관한 사항
Schedule J	CFC의 이익잉여금과 이익에 관한 정보	–

〈표 Ⅲ-3〉의 계속

구분		내용
Schedule M	CFC와 주주, CFC와 다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비용분담약정, 커미션 등을 포함해 총 26가지 거래에 대한 i) 미국에서 해당 거래를 신고한 자 ii) 거래를 신고한 자가 통제하는 국내법인이나 파트너십 iii) 거래를 신고한 자가 통제하는 다른 외국법인이나 파트너십 iv) CFC의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주주 v) 외국법인을 통제하고 있는 법인의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주주를 기재
Schedule O, Part 1	○ Schedule O는 외국기업의 조직과 재조직, 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 ○ Part I은 미국 임원이나 이사가 작성	○ 주주명, 주주의 주소, 주주의 사회보장번호, 10%의 주식을 취득한 날짜, 추가적으로 10% 취득한 날짜
Schedule O, Part2	Part 2는 주주가 작성하는 난임	○ Section A: 일반적인 주주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주주의 최근 소득세신고에 관한 사항(신고형태, 신고한 날짜, 신고한 세무서), 주주가 최근 보고한 정보보고 서식 ○ Section B: 외국법인의 임원이나 이사인 미국인 - 미국인 임원이나 이사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이사인지 임원인지 구분 ○ Section C: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 - 주주명, 취득한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방법, 취득한 주식의 수(직접취득, 간접취득, 의제취득 각각 기재), 취득가액, 취득했던 자의 이름 및 주소 ○ Section D: 주식처분 - 처분한 주주명, 주식의 종류, 처분일, 처분방법, 처분한 주식의 수(directly, indirectly, constructively), 처분가액, 주식처분한 자의 이름과 주소 ○ Section E: 외국법인의 조직이나 재조직 - 양도자의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양도일자, 외국법인에 양도한 자산(자산명, 시가, 양도자가 미국인인 경우에는 수정 후 기초가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양도한 자산에 대한 설명 ○ Section F: 기타 추가정보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2012.12.

나.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1) 제5472호 서식 25% 외국인 소유 미국회사나 미국에서 거래되거나 사업하는 외국법인에 관한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 of a 25% Foreign-Owned U.S. Corporation or a Foreign Corporation Engaged in a U.S. Trade or Business)

□ 관련법: 내국세법 제6038A조 및 제6038C조

□ 목적: 과세연도 중 국내외 관계회사[16]와 법에서 정한 보고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 보고대상 회사(reporting corporation): 직·간접 외국인 지분보유 정도가 25% 이상인 미국법인이나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과세당국에 제5472호 서식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제출대상: 보고대상 회사가 국내외 특수관계인과 보고대상 거래를 한 경우 관련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함

□ 제출기한: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서식에 첨부해서 제출함

○ 단,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서식만 별도로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함

---

16) 관계회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 보고대상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주주
- ○ 내국세법 제267조(b) 또는 제707조(b)(1)에 따라 보고대상 회사와 관계가 있는 자
- ○ 보고대상 회사의 25% 외국주주와 내국세법 제267조(b) 또는 제707조(b)(1)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
- ○ 내국세법 제482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회사와 관계가 있는 자

〈표 Ⅲ-4〉 제5472호 서식의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고
Part I - 보고대상 회사에 관한 사항 (모든 보고대상 회사가 작성)	○ 보고대상 회사의 이름, 구체적인 주소 ○ 고용주의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총자산가액 ○ 사업활동 및 사업활동 코드 ○ 이 서식을 통해 보고된 해외 관계회사 거래 총액 ○ 해당 과세연도에 제출한 제5472호 서식의 수 ○ 이 서식을 통해 보고된 지급총액 ○ 법인의 설립국가 ○ 보고대상 회사가 거주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하는 국가 ○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 ○ 외국인이 (a) 보고대상 회사의 의결권 (b) 보고대상 회사 주식의 총가치 중 적어도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체크	
Part II - 25% 외국주주 (각 주주별로 정보를 입력)	○ 25% 지분을 직접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의 이름과 주소 ○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시민권, 설립이나 조직이 있는 국가 ○ 25% 외국주주가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한 국가 ○ 미국 사회보장번호,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Reference ID number는 제출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이며, 추적가능하게 매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야 함
Part III -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이 외국인 또는 미국인인지 체크 ○ 특수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 미국 사회보장번호,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사업활동 및 사업활동 코드 ○ 관계 - 보고대상 회사의 특수관계인, 25% 외국주주의 특수관계인, 25% 외국주주인지 체크 ○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국가	
Part IV - 보고대상 회사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통화거래(monetary transaction)	○ 주식, 유형자산의 판매, 비용분담액 회수, 임대료, 로열티 대금 회수, 중개수수료 회수, 이자나 대여금의 회수 등 총 12가지 현금회수 거래금액을 기재	
	○ 주식, 유형자산의 매입, 비용분담액 지급, 임차료, 로열티 지급, 중개수수료 지급, 차입금이나 이자비용의 지급 등 총 12가지 현금지급 거래금액을 기재	

〈표 Ⅲ-4〉의 계속

구분	세부항목	비고
Part V - 보고대상회사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비통화거래 및 불완전보수 (less-than-full consideration)	○ 보고대상 회사는 보고대상 거래 스케줄을 첨부해야 하며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시트를 작성해서 제출함 ○ 거래금액과 거래성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상: 국내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부분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Part VI - 추가정보	1) 거래대상 회사는 외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가? 2) 1)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수입물품의 관세가격보다 재화의 원가가 더 높은가? 3) 2)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관세가격과 재화의 원가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 4) 1)과 2)에서 모두 예를 선택한 경우 제5472호 서식을 제출하는 시점에 수입재화가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국 내에 있어 이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 5) 과세연도 중 외국모법인이 비용분담약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6) 과세연도 중 외국모법인이 처음으로 비용분담약정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2012.12.

2) 제8858호 서식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foreign disregarded entity)[17]

□ 제8858호 서식은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Disregarded Entities)에 관한 서식임

□ 목적: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를 직·간접적으로나 간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이 제출하는 서식으로 내국세법 제6011조, 제6012조, 제6031조와 제6038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됨

□ 제출대상: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주인 미국인은 제8858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주인 미국인: Schedule M을 제외한 서식의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함
- ○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자인 CFC와 관련해 제5471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한 미국인은 제출대상에 포함됨
- ○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자인 피지배 외국파트너십(Controlled Foreign Partnership)과 관련해 제8865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한 미국인은 제출대상에 포함됨

□ 보고방법: 소득세 또는 다른 서식의 정보보고 신고기한까지 제출함

□ 제8858호 서식을 통해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와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재무정보, 장부의 위치를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관련해서도 다른 서식과 동일하게 과세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

17)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란 미국에서 조직되거나 설립되지 않은 기업이며, 실질 소유자와 분리되어 있으나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세법상으로 그 실체가 부인되는 기업임. 내국세법상 부인 가능 법인체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8832호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Ⅲ-5〉 제8858호 서식의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비고
공통사항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과세연도(시작일과 종료일)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신고자의 과세연도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이름과 주소 ○ (가능한 경우) 미국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현지 법상 기업의 형태와 설립 국가 ○ 설립일자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 분류된 날짜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수입에 대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 사업활동의 성격 ○ 기능통화	Reference ID number는 제출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이며 이 ID는 추적할 수 있게 매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야 함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미국 대리인이나 미국지점의 이름과 등록번호, 주소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또는 기업)의 이름과 주소, 장부와 기록의 보관장소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 과세기간 ○ 미국인인 경우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법적 설립국가 ○ 기능통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주(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 이름과 주소 ○ 법적 설립국가 ○ 미국인인 경우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기능통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직접 소유주에 관한 정보
	○ 세무상 소유주와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관계도,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 및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각 회사의 관계도에 포함된 모든 회사의 설립국가, 세무상 기업형태, 소유지분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를 첨부	

〈표 Ⅲ-5〉의 계속

구분	세부항목	비고
Schedule C -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총매출액 ○ 총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기타 이익 ○ 총이익 ○ 총공제 ○ 기타 다른 조정항목 ○ 장부별 당기순손익	○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에 따른 기능통화로 금액을 기재 ○ 기능통화와 달러금액을 모두 기재
Schedule C-1 - 내국세법 제987조의 손익정보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터 받은 송금액 ○ 내국세법 제987조에 따른 기능통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터 받은 송금액이 모두 직접 소유주에게 귀속되었는가? -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 과세연도 중 수익적 소유자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터 받은 금액과 관련해 내국세법 제987조에 따른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였는가? -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Schedule F -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자산항목 ○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 ○ 기타 자산 부채 및 자본항목 ○ 부채 ○ 자기자본	회계연도 개시일의 잔액과 회계연도 종료일의 잔액을 모두 기재
Schedule G - 기타정보	○ 과세연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신탁의 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는가? ○ 과세연도 중 해외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다른 해외 파트너십의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적이 있는가? ○ 과세연도 중 소유주가 부인 가능 법인체로 인정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질문임. 수익적 소유자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주식이나 부채와 관련한 손실을 청구하였는가?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에 대한 지분이 연결집단에서 분리된 단위로 인식되는 경우, 분리된 단위가 규칙 1.1503(d)-1(b)(5)(ii)에서 정의한 이중연결손실을 인식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금액을 기재 ○ 기타 이중연결손실에 관한 질문내용 3가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지 성격임

〈표 Ⅲ-5〉의 계속

구분	세부항목	비고
	○ 과세연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내국세법 제901조(m)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을 지급하였는가? ○ 과세연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내국세법 제909조가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을 지급했거나 지급예상액이 있는가?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수익적 소유자가 CFC이고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제조, 판매 또는 구매하는 지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대답.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CFC 사이의 국제거래나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CFC의 다른 지점 사이의 국제거래가 있었는가?	
Schedule H - 이익잉여금, 이익이나 과세표준(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	○ 각 해외 장부별 당기순손익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이익잉여금 및 이익(또는 과세표준) ○ DASTM 손익 ○ 미국 달러로 이익잉여금 및 이익(또는 과세표준) 기재	
Schedule M - 해외 수익적 소유자의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신고의무자(또는 다른 관계회사) 사이의 국제거래(Transaction Between Foreign Disregarded Entity of a Foreign Tax Owner and the Filer or Other Related Entities)	○ 19가지의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재 – 가산: 재고자산의 판매, 자산권리의 판매, 특정 용역에 대한 보상, 수수료수익, 임대료, 로열티수익과 라이센스수익, 배당금, 이자수익, 기타 수익 – 차감: 재고자산의 매입, 유형자산의 매입, 자산권리의 매입, 특정 용역의 매입대가, 수수료지급액, 임차료, 로열티와 라이센스지급액, 이자비용 – 대여: 대출금과 차입금 ○ CFC에 대해 19가지 항목에 대해 4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기재: (i) 신고서를 제출하는 미국인, (ii) 신고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신고자를 통제하는 국내 회사나 파트너십, (iii) 수익적 소유자 외에 신고자를 통제하거나 신고자에 의해 통제되는 외국 회사타 파트너십, (iv) 신고자 외에 CFP에 10% 이상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 ○ CFP에 대해 19가지 항목에 대해 5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기재: 4가지 형태는 CFC와 동일하며 여기에 수익적 소유자를 통제하는 회사의 다른 소유주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주주를 추가	○ 제8858호 서식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각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별로 제출함 ○ 제출대상: 수익적 소유자가 CFC이거나 CFP(Controlled Foreign Parnership)인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8858, 2012.12.

3) 제8865호 서식 – 해외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

□ 제8865호 서식은 해외 파트너십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보고(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Partnerships)에 관한 것임

□ 목적: 내국세법 제6038조 및 제6038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서식임

□ 제출대상: 서식의 제출대상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4가지 중 하나의 분류에 해당하는 자가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A: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 지분의 50% 이상 소유한 미국인임

○ B: 해외 파트너십이 해당 과세연도 중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그 미국인들임. 단, 첫 번째 제출자에 해당하면 두 번째 제출자로 보지 않음

○ C: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파트너십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에 자산을 기부한 경우 그 미국인임

– 기부 직후 해외 파트너십 지분 중 10%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게 된 때

– 또는 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D: 과세연도 중 내국세법 제6046A조에 따른 취득, 처분과 지분의 변동과 같은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한 미국인임

□ 제출대상 분류별로 서식 중 작성해야 할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Ⅲ-6〉 제출의무자별 제8865호 서식 작성

구분	A	B	C	D
공통부분	○	○	○	○
Schedule A	○	○	○	○
Schedule A-1	○	–	○	–
Schedule A-2	○	○	○	○
Schedule B, K, L, M, M-1, M-2	○	–	–	–
Schedule N	○	○	–	–
Schedule D	○	–	–	–
Schedule K-1	○	○	–	–
Schedule O	–	–	○	–
Schedule P	–	–	–	○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2012.

□ 서식에서는 해외파트너십의 소유주, 해외 파트너십의 특정 파트너에 대한 정보, 손익과 대차에 대한 재무정보, 파트너 사이의 거래 등과 같은 파트너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함

○ 특히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 위증에 따른 벌칙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이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표 Ⅲ-7〉 제8865호 서식의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공통사항	해외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제출대상에 관한 정보	○ 이름 ○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번호(EIN or ITIN) ○ 주소 ○ 제출대상의 분류(4가지 중에서 선택) ○ 제출자의 과세연도 중 부채: 논리코스, 적격 논리코스와 기타 부채로 구분 ○ 제출자가 연결집단(consolidated group)에 속해 있으며 모법인이 아닌 경우, 모법인의 이름, 납세자번호와 주소를 기재
	특정 다른 파트너에 관한 정보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나 사회보장번호, 분류
	해외 파트너십	○ 해외 파트너십의 이름과 주소 ○ 납세자번호 ○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임의 부여한 Reference ID number ○ 설립국가 ○ 설립일자 ○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 ○ 사업활동 ○ 기능통화, 환율
	해외 파트너십의 과세연도에 관한 정보	○ 미국에 있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와 사회보장번호 ○ 해외 파트너십이 신고한 서식(Form 1042, Form 8804, Form 1065 or 1065-B 중 선택) ○ 설립국가의 해외 파트너십의 대리인 이름과 주소 ○ 해외 파트너십의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이름과 주소, 장부와 기록의 위치 ○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 – 해외 파트너십이 특별 배분한 것이 있는가? – 파트너십이 내국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된 단위의 기업(seperate unit)을 소유하고 있는가? – 파트너십이 과세연도 중 총 수령한 금액이 25만달러 미만이고 연도말 총 자산이 USD 100만 미만에 해당하는가? ○ Form 8858을 보고한 경우 첨부 ○ 설립국가에서 파트너십을 어떠한 형태의 회사로 보는가?
	서명란	○ 무한책임 파트너 또는 유한책임회원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함 ○ 모든 아는 정보와 지식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증에 따른 벌과금을 부담
	대리인	○ 대리인 이름, 대리인 서명, 신고일, 자진신고납부의 경우 체크 ○ 세무대리인 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 ○ 회사명, 회사의 납세자번호, 회사주소, 전화번호

〈표 Ⅲ-7〉의 계속

구분	세부항목	
Schedule A	파트너십의 의제소유권 (Constructive Ownership)	○ 직접지분소유 또는 의제지분소유 여부를 체크 ○ 의제지분소유로 체크한 경우, 의제지분소유 대상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를 기재 ○ 외국인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 파트너십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Schedule A-1	해외 파트너십의 특정 파트너	○ 각 파트너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 외국인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 질문) 파트너십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 중 다른 외국인이 있는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Schedule A-2	관계회사 (Affiliation Schedule)	○ 해외 파트너십이 직·간접적으로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외 파트너십의 리스트를 기재 ○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영업손익(ordinary income or loss) ○ 해외 파트너십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Schedule B	손익계산서 - 거래 또는 영업이익	○ 수익 - 총매출액, 매출차감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다른 파트너십, 재산과 신탁의 영업손익, 순농장손익, 제4797호 서식의 순손익, 기타손익, 총손익
		○ 차감 - 급여, 파트너에 대한 지불보증(guaranteed payments), 수선유지비, 대손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이자비용, 감가상각비(감가상각환입액), 감모상각비, 퇴직자연금지급액 등(retirement plan), 복리후생비, 기타 다른 비용, 총비용
		○ 거래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
Schedule D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에 관한 내용 보고: 자본자산의 처분이나 자본자산의 교환, 자본이득의 분배, 비영업 대손상각비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보고함
Schedule K	파트너별 지분내역 (distributive share items)	○ 손익 - 영업손익, 순임대부동산손익, 임대손익(총임대손익 - 임대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 순임대손익), 지불보증(guaranteed payments), 이자수익, 배당금(일반배당, 적격배당), 로열티, 단기자본손익, 장기자본손익, 수집품의 자본이득, 환수되지 않는 내국세법 제1250조의 자본이득, 내국세법 제1231조에 따른 자본손익, 기타손익
		○ 차감 - 내국세법 제179조에 따른 차감, 기부금, 투자관련 이자비용, 내국세법 제59조(e)(2)에 따른 지출액, 기타 다른 차감액
		○ 자영업 -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손익, 총농업이나 총어업이익, 총비농업이익
		○ 공제 - 내국세법 제42조(j)(5)에 따른 저소득가정에 대한 공제, 기타 저소득가정에 대한 공제, 적격복구비용(부동산 관련), 기타 임차부동산공제, 기타 임차관련 공제, 기타공제
		○ 해외 거래 - 미국의 귀속자명 또는 귀속국가명, 모든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총이익, 파트너 단계에서 발생한 총이익, 파트너십 단계에서 발생한 해외 총이익, 파트너 단계에서 할당된 비용에 대해 수동·일반·기타범주로 구분해서 기재,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 할당된 비용을 이자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 총 해외납부한 세금 및 총 해외납부할 세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세금, 기타 외국세금에 관한 정보(세부명세 첨부)

〈표 Ⅲ-7〉의 계속

구분	세부항목	
		○ 최저한세 항목 - 1986년 이후 감가상각비 조정, 조정된 손익, 가스와 오일 외 감모비, 오일 · 가스 · 지열에 관한 자산에서 발생한 총이익과 비용, 기타 다른 최저한세 항목(세부명세 첨부)
		○ 기타 정보 - 세금면제 이자수익, 기타 세금면제 이익, 불공제되는 비용,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배분, 기타 자산의 배분, 투자이익, 투자비용, 기타 다른 항목과 금액
	Schedule K-1	○ 수익, 차감, 공제 등에 대한 파트너지분(Partner's share of income, deductions, credits, etc.)에 관한 서식임 ○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 파트너에 대한 정보(손익, 투자액의 변동, 이름, 주소에 관한 정보 포함), 당기 수익 · 비용 · 공제 · 기타 항목에 대한 파트너 지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Schedule L	장부별 대차대조표 (기초와 기말 금액 기재)	○ 자산 - 현금,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미국정부채권, 비과세증권, 기타 자산, 파트너에 대한 대여금,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관련 대여금, 기타 투자자산, 건물과 기타의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감모상각자산과 감모상각누계액, 토지,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자산, 총자산
		○ 부채와 자본 - 매입채무, 1년 미만 단기 주택담보대출과 미지급금, 기타유동부채, 논리코스론(nonrecourse loan), 파트너로부터 차입금, 1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과 미지급금, 기타 부채, 파트너의 자본금, 총부채 및 자본합계
Schedule M	이자에 대한 대차항목 (기초와 기말 금액 기재)	○ 총미국자산 ○ 총해외자산 – 수동적 범주의 자산 – 일반 범주의 자산 – 기타 자산(세부항목 첨부)
Schedule M-1	각 장부의 손익과 세무신고서의 손익을 조정	○ 장부별 손익 ○ 당기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 포함된 이익 ○ 건강보험 외의 지불보증액 ○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기 장부에 기록된 비용 – 감가상각비 – 여행 및 접대비 ○ 총합계 ○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기 장부에 기록된 수익 – 비과세이자 ○ 당기 장부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 포함된 비용 – 감가상각비 ○ 합계

〈표 Ⅲ-7〉의 계속

구분	세부항목	
Schedule M-2	파트너의 자본계정 분석	○ 기초금액 ○ 지분 증가 - 현금, 재산 ○ 장부별 손익 ○ 기타 증가액 (항목별로 각각 기재) ○ 지분 감소 - 현금, 재산 ○ 기타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기재) ○ 기말금액
Schedule N	CFP(피지배 해외파트너십)와 파트너 또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 간의 거래	○ 각 거래형태별로 네 가지 유형의 거래금액을 기재함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을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국내기업 또는 파트너십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받는 다른 해외 기업 또는 파트너십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 외의 피지배 해외파트너십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 거래형태는 크게 현금유입, 현금유출, 대차거래의 세 가지로 구분됨 – 현금유입 - 재고자산의 판매, 재산권의 판매, 기술, 경영, 엔지니어, 건설이나 유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입, 커미션수익, 임차료, 로열티와 라이센스 수입, 배당수입, 이자수입과 기타 – 현금유출 - 재고자산의 매입,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의 매입, 재산권의 매입, 술, 경영, 엔지니어, 건설이나 유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지출, 커미션지급액, 임차료, 로열티와 라이센스 지출액, 배당금지급액, 이자비용과 기타 지출 – 차입금(당기 중 최고잔액을 기재), 대여금(당기 중 최고잔액을 기재)
Schedule O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자산이전	○ 양도자 이름, 서식보고인의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번호 등, 해외 파트너십의 이름, 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 없는 경우 Reference ID number ○ 내국세법 제6038B조에 따른 보고대상 이전: 각 거래별로 이전일자, 이전한 항목의 숫자, 이전한 날 자산의 시장가격, 원가, 내국세법 제704조(c)에 따른 분배방법, 이전으로 인해 실현된 이익, 이전일 이후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율을 기재 – 거래는 현금, 주식이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와 다른 증권, 재고자산, 거래나 영업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의 여섯가지 종류로 구분함 ○ 내국세법 제6038B조에 따른 보고대상 처분 - 자산의 종류, 양도일자, 처분일자, 처분방법, 파트너십에 의해 실현된 이익, 파트너십에 의해 실현된 감가상각환입, 파트너에게 할당된 이익, 파트너에게 할당된 감가상각환입 ○ 내국세법 제904조(f)(3)이나 제904조(f)(5)(F)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있었는지?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표 Ⅲ-7〉의 계속

구분	세부항목	
Schedule P	해외 파트너십의 취득, 처분과 지분변동에 관한 서식	○ 취득에 관한 사항 – 지분을 취득한 자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 등 – 취득일, 취득한 지분의 시장가격, 지분취득원가, 취득 전 지분율, 취득 후 지분율 ○ 처분에 관한 사항 – 지분을 취득한 자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 등 – 처분일, 처분한 지분의 시장가격, 처분한 지분원가, 처분 전 지분율, 처분 후 지분율 ○ 지분의 변동 – 변동이유, 변동일, 지분의 시장가격, 지분의 원가, 변동 전 지분율, 변동 후 지분율 ○ 기타 보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 보완

주: 미국은 의제지분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접 지분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보고대상으로 함.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그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2012

4) 제1120호 서식 – Schedule UTP

□ 목적: 국세청은 감사보고서에 세무리스크를 공시한 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 시에 여기 포함된 UTP(Uncertain Tax Position)를 신고하게 함

○ 2006년 12월 15일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은 FIN 48[18]에 따라 소득세와 관련된 기업의 세무리스크를 감사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음

□ 제출대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 시 제1120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보고할 UTP가 없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첫 번째 요건은 기업이 소득세 신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제1120호 서식 미국 법인소득세 신고서(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 제1120-F호 서식 외국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U.S. Income Tax Return of a

18) Fin 48은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issued Interpretation No. 48의 약자임

Foreign Croporation),

- 제1120-L호 서식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소득세 신고서(U.S. Life Insurance Company Income Tax Return),
- 제1120-PC호 서식 미국 자산과 재난보험회사의 소득세신고서(U.S.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y Income Tax Return)

○ 둘째,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5천만달러 이상임

○ 셋째, 회사나 관계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고 관련 재무제표를 발행한 기록이 있어야 함

○ 넷째, 기업이 Schedule UTP에 보고할 항목이 있어야 함

□ 이 서식에서는 세무리스크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관계회사의 UTP에 관한 사항도 모두 기재해야 함

○ 관계회사의 세무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체크하도록 되어 있음

〈표 Ⅲ-8〉 제1120호 서식의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Part I - 당기 UTP	○ 해당 UTP별로 관련된 내국세법 조문번호를 기재 ○ 해당 UTP별로 일시적차이 또는 영구적차이인지 여부를 기재 ○ 해당 UTP별로 UTP가 도관(Pass-Through Entity)과 관련 있는 경우 그 도관의 납세자번호(EIN)를 기재 ○ 해당 UTP별로 비중이 큰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함. 즉, Part I과 Part II의 UTP 총합에서 해당 UTP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비중이 큰 항목에 해당함 ○ 금액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며, 순위를 표시하는 숫자 앞에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리스크 관련해서는 T를 기재하고 기타 다른 세무리스크에는 G를 기재함 ○ 미래 반대조정이 발생할 부분
Part II - 전기 UTP	다른 사항은 Part I과 동일하나 세무리스크가 발생한 연도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
Part III - UTP에 대한 설명	Part I과 Part II에 보고한 UPT에 대해 각 UTP별로 간단한 설명을 기재

자료: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UTP(Form 1120), 2012.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위에서 소개한 정보보고에 관한 서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등을 통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조사함

1) 제5471호 서식

□ 가산세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함

□ 내국세법 제6038조(a)[19]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각 외국법인에 대해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는 5만달러임

○ 가산세는 Schedule J 및 O에는 적용하지 않음

□ 내국세법 제6046조[20]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보고대상 거래 중 신고되지 않은 건별로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는 5만달러임

○ 가산세는 Schedule J 및 M에는 적용하지 않음

□ 중가산세(criminal penalty): 내국세법 제6038조 및 제6046조에 따른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

19) 과세당국에 보고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임

20) 제출의무자, 신고형식과 제출기한에 관한 내용임

□ 또한, 비공개된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을 과소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단,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면 가산세가 면제됨

2) 제5472호 서식

□ 기한 내에 Form 5472호 서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식이 불완전한 경우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됨

□ 잘못된 정보나 사기성 있는 정보를 신고한 경우 중가산세(criminal penalty)를 부과할 수 있음

3) 제8858호 서식

□ 내국세법 제6038조(a)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각 CFC나 CFP에 대해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는 5만달러임

○ 가산세는 Schedule J 및 O에는 적용하지 않음

□ 중가산세(criminal penalty): 내국세법 제6038조에 따른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중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4) 제8865호 서식

□ 제출자별[21]로 적용되는 가산세가 다름

□ 제출자 A와 B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각 해외 파트너십의 정보에 대해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는 5만달러임

○ 잘못된 정보나 사기성 있는 정보를 신고한 경우 내국세법 제7203조, 제7206조 및 제7207조에 따른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 제출자 C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내국세법 제6038B조와 관련 규칙에서 요구한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자는 자산 시장가치(기부시점으로 평가)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함

○ 정보보고의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면 가산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한도는10만달러임

□ 제출자 D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내국세법 제6046A조에 따른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만달러의 가산세를 부담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

21) 제출자는 다음과 같음
- ○ A: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 지분의 50% 이상 소유한 미국인임
- ○ B: 해외 파트너십이 해당 과세연도 중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그 미국인들임
- ○ C: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파트너십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에 자산을 기부한 경우 그 미국인임
  - 기부 직후 해외 파트너십 지분 중 10%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게 된 때
  - 또는 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 D: 과세연도 중 내국세법 제6046A조에 따른 취득, 처분과 지분의 변동과 같은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한 미국인임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는 5만달러임

□ 또한, 비공개된 외국기업의 자산을 과소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단,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면 가산세가 면제됨

5) 제1120호 서식

□ 서식에 오류가 있거나 기한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3. 호주

□ 과거 호주는 역외 세원관리를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2010년 중반까지 역외소득 자발적 신고 제도를 실시하였음

○ 이 제도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임

○ 호주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 등의 8,000건이 넘는 자발적 신고를 통해 9.5억호주달러 이상의 누락된 소득(자본이득, 비용과다상계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22)]

□ 한편, 호주의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서식(Schedule 25A)과 과소자본세제서식(Thin capitalisation schedule)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서식을 2012년 7월부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개정된 서식인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13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

22) http://www.ato.gov.au/Business/Large-business/In-detail/Large-business-bulletin/2013/Large-business-bulletin--March-2013/?default=&page=3

가.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개요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이하 'IDS')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는 명세서로서 다음의 작성대상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기업(company), 파트너십(partnership), 신탁(trust)이 과세표준 신고 시 IDS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IDS를 작성하여야 함[23)]

□ IDS는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Section으로 구분됨

○ Section A: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 Section B: 해외 금융계약(Financial arrangements)

○ Section C: 외국 기업체의 지분(Interests in foreign entities)

○ Section D: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 Section E: 은행 및 금융기관(Financial Services Entities)

○ Section F: 기타 사항(Miscellaneous)

○ Section G: 납세자 진술(Taxpayer's declaration)

□ IDS의 기본적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음

○ IDS의 작성은 호주달러로 기입하여야 하고, 특별히 세무상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회계와 세무상 수치와 차이가 있더라도 회계상 수치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못한 경우, 국제거래 명세서의 앞부분에 추정을 사용한 곳과 추정을 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기술하여야 함

□ 한편 위의 Section은 우리나라의 국제서식 분류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Section A의 18번 문항과 C의 21~24번 문항

23) 호주 국세청,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

○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Section A와 B
○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Section C
○ 과소자본세제: Section D
○ 역외금융기관: Section E
○ 기타: Section F

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우리나라의 국제서식 중 해외투자와 가장 비슷한 IDS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Section A의 18번 문항과 C의 21~24번 문항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Section A의 18번 문항은 지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대여금과 지점으로 부터의 차입금(본지점간 전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Section C의 21번에서 24번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ection C의 21번은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여기서 말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조세피난처(Specified countries), 그리고 호주와 조세제도가 비슷한 국가(Listed countries), 그 밖의 국가(Other unlisted countries)로 구분하여 기재함
–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실체(5인 이하여야 함)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직간접적으로 외국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권리를 가진 경우
– 해외기업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동 해외기업이 다른 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 지분소유비율에 관계없이 5인 이하의 호주 실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 Section C의 22번 문항은 국가별로 피지배외국법인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하도

록 하고 있음

○ Section C의 23번 문항은 피지배외국법인들의 이윤을 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임

○ Section C의 24번 문항은 해외지점 혹은 피지배외국법인들에서 발생한 비과세 비면제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재

– 각 문항의 상세내역은 〈표 Ⅲ-11〉을 참조할 것

다.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1) Section A: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 Section A는 주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Section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보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초점을 두고,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산출관련 문서화 정도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Section A는 연간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2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됨

가) 전반적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 IDS SECTION A의 2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인한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주로 어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국가에서의 거래의 행위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음

○ 이러한 질문은 조세피난처인 나라(3번 질문)와 아닌 곳(2번 질문)을 구분하여 동일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 조세피난처는 국세청에서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모나코, 사이프러스 등 총 36개 국가를 지정하고 있음

나) 거래 유형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 문항 5부터 16까지는 당해 사업연도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발생한 수익과 비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문서화 정도 여부를 기입하도록 함

□ 한편 위의 정보들은 해외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설명함

○ 유형자산 거래(원재료와 지분증권 포함)

○ 로열티와 라이센스 수수료

○ 렌트와 리스

○ 서비스 거래

○ 파생상품 거래

○ 자산유동화와 채무 팩토링

○ 기타 금융 거래

○ 기타 해외 특수관계자의 거래

〈표 Ⅲ-9〉 IDS Section A의 세부항목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 - Section A 응답대상자 구분	○ 사업연도 중 자산이나 서비스의 거래 혹은 자금 대여 및 차입거래를 포함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2만호주달러 초과 여부에 대한 질문	○ 2만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Section A의 정상가격에 대한 문항에 대해 답하지 않고, 사업구조 여부를 묻는 문항 17에 대해서 질문하면 됨
문항 (3) - 특수관계거래가 많은 국가와 거래금액 (조세피난처제외)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특수관계자가 소재한 국가를 수익과 지출이 많은 순서대로 밝히고, 그 금액도 기재함(조세피난처 제외)	○ 국가별로 총 거래금액(수익과 비용을 더함)을 산출하여(국가에 여러 기업이 있으면 합산), 총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3개 나라를 선정함 ○ 동 국가의 수익과 비용을 국세청에서 정한 activity type[1]에 맞춰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을 기입함 ○ 한편, 기업은 본인이 거래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만 동 문항에 기입해야 함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고객을 대리하여 국외 특수관계자와 스왑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를 통해 받을 채권과 지급 채무는 동 거래에 기입하지 아니함)
문항 (4) - 특수관계거래가 많은 국가와 거래금액 (조세피난처)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특수관계자가 소재한 국가를 수익과 지출이 많은 순서대로 밝히고, 그 금액도 기재함(조세피난처 제외)	○ 문항 (3)과 동일하나, 그 대상이 조세피난처임
문항 (5) - 유형의 자산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유형의 자산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에 대한 질문	○ 유형의 자산 거래는 주식과 원재료 거래를 포함하여,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입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14개 방법에 따른 코드[2]를 입력해야 함 ○ 문서화의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이를 정해진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데, 코드는 백분율의 범위[3]를 6개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음 ○ 문서화 정도에 대한 백분율은 합리적 방법에 의해 추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통계적 기법에 따른 샘플링을 통한 백분율 산출 방법도 사용가능하나, 이 경우 그 산출 과정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함

〈표 Ⅲ-9〉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6) - 로열티 및 라이센스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로열티 및 라이센스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에 대한 질문	○ 로열티와 라이센스 fee를 구분하고, 지불한 금액과 수령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그 밖에는 문항(5)와 동일함
문항 (7) - 렌트 및 리스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렌트 및 리스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에 대한 질문	○ 문항(5)와 동일함
문항 (8) - 서비스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서비스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에 대한 질문	○ 서비스 유형을 11개[4]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 그리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문서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 (9) - 파생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파생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수익 및 비용 그리고 주요 파생상품의 거래 유형, 문서화 정도 등을 표시하여야 함	○ 파생상품은 채권, 자본, 특정 인덱스로부터 파생된 가치를 가지는 계약상 권리로서 상업상 그리고 회계상 말하는 통상적인 파생상품을 의미함 ○ 국세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파생상품으로 선도, 옵션, 스왑, 신용파생상품을 기술하고 있음 ○ 파생 거래는 파생상품의 취득과 매각으로 구성됨 ○ 파생 거래의 신고는 매매, 헷지, 투기, 차익거래(trading, hedging, speculation or arbitrage)를 포함한 모든 파생 거래가 포함되어야 함 ○ 회계상 파생상품을 평가할 때 사용한 방법(mark-to-market/fair value)에서 산출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입함(회계상 파생상품 평가로 인한 이익과 손실) ○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기입함(예를 들면, 이자율 스왑) ○ 만약 계약에 의해 주고 받는 금액의 순액만을 수수하기로 하였다면, 순액을 기입하면 됨

〈표 Ⅲ-9〉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 파생상품은 총 8개로 구분되어 기입하는데, Credit default swaps, Currency swaps, Forwards, Interest rate swaps, Options, Swaps - other, Warrant, Other로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0) - 자산유동화 등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유동화 거래(Securitisation) 및 채무 팩토링(Debt factoring)과 관련된 문항임	○ 특수관계자과의 팩토링 및 유동화 대상 부채와 자산의 장부가액 및 거래금액을 총액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1) - 그 밖의 금융 거래	○ 문항 9와 10을 제외하고 기타 금융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문항임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대여 및 차입 거래와 관련하여 연평균 차입액과 대여액을 기재하되, 이자를 수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그다음으로 이자, 보증료, 보험료, 재보험료, 기타 거래에 대하여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주요 가격결정 방법과 문서화 정도를 기입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2) - 그 밖의 거래	○ 문항 12는 문항 5에서 11까지 중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중 빠진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문항(5)와 동일함
문항(13) - 자본적 지출 거래	○ 문항 5~11에 속하지 않은 특수관계자와의 자본적 지출거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국세청 가이드에서는 구축물이나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그 예로 들고 있음 ○ 한편, 기입 시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표 Ⅲ-9〉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14) - 대가 없는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 자산이나 권리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를 기술하여야 함	○ 교환이나 할인 등과 같은 거래(Non-monetary payment)는 위와 구분하여 기재함 ○ 이를 기입할 때에는 거래내역을 자본거래와 수익거래로 구분(문항 12 및 13과 같은 구분)하여 기재하되, 거래상대방 국가와 거래의 종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거래의 종류는 모두 20개[5]로 구분되어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5) - 종업원 보수	○ 다국적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보수를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임	○ 관련 종업원 보수를 수령한 금액과 수여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문항(16) - 원가부담	○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와 같이 자산이나 권리를 획득하거나, 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원가를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임	○ 금액 정보는 없고, 부담하는 당사자였는지 아닌지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문항(17)- 구조조정	○ 당해 사업연도 중에 해외 특수관계자 혹은 지점을 포함하여 구조조정(Restructuring)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임	○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는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구조조정 후에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하게 됨(yes or no) ○ 복수의 구조조정이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 3가지에 대하여 정보를 기입하는데, 기입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 사업체(entity)인지 지점(branch)인지 –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본의 크기(Capital Value)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 부채, 기능, 위험, 권리, 의무의 성격과 관련된 정보(예를 들면, 회사의 주식, 계약 생산(contract manufacturing), 보험정책 등) – 상대방 국가 – 문서화 정도 – 전문적인 가치평가 분석이나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이 있었는지 여부

〈표 Ⅲ-9〉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 호주 국세청에서 밝힌 Restructuring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사업체의 인수 및 처분 또는 오너십의 변동을 야기시키는 조직 개편 – 유무형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처분 등[6]의 변화를 수반하는 Business operation 또는 Business line의 설립, 확장, 축소, 청산
문항(18)- 지점 운영 여부	○ 지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임	○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대여금과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본·지점 간 전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주: 1) 호주 국세청에서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33개로 나누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Administrative services, Advisory services, Asset management, Borrowing and lending, Brokerage, Cash & trade services, Construction, Custody and transaction clearing services, Derivatives, Distribution and sale of goods, Financing activities, Guarantees, Insurance and reinsurance, Leasing, Licensing or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Logistics, Manufacturing and sale of goods, Media,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Primary production/extraction and sale of goods, Purchase and distribution of goods, Purchase and manufacture of goods, Receipt/payment of dividends and distributions from trusts and partnerships, Retail trade, Sales and marketing services, Securitisation services,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Superannuation, Technical services, Toll manufacturing services, Treasury related services, Underwriting services, Utilities and infrastructure, Other

2) 호주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14개로 구분하고 있음
– Apportionment of costs, Apportionment of incom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ost-contribution arrangement, Cost-plus method, Fixed mark-up applied to cost, Fixed percentage of resale price, Marginal costing, Profit split method, Resale price metho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whole-of-entity), Other arm's length methods, No transfer pricing method used

3) 호주 국세청은 정상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0%/1%~25%/25%~50%/50%~75%/75%~100%/100%

4) 호주 국세청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를 다음과 같은 11개로 구분하고 있음
○ Treasury related services: 상대방의 재무활동에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
– 납세자 본인이나 해외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래 또는 투자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내외부의 자금 조달
–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발과 자문
– 현금 등 유동성 관리
– 재무와 관련된 복잡한 전략이나 정책, 절차에 대한 서비스

○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ervices: 다음과 같이 인적 자원 및 금융 자원의 관리, 증진, 모니터링에 관련된 활동
– 백 오피스 서비스(back office services)
– 인력의 충원 및 배치와 관련된 관리 비스
– 회계 서비스
○ Insurance services: 보험 계약의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보험 중개와 관련된 수수료는 본 질문에서 제외됨
○ Reinsurance services: 재보험 계약의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함
○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연구 및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 및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그 지식재산권을 소유하지 않은 것
○ Sales and marketing services: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함
– 광고
– 브랜드 프로모션(brand promotion)
– 판매 전략
– 고객 지원 서비스
○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의 지원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이는 임대와 관련된 활동임)
○ Technical services: 엔지니어링, 건축,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광업 탐사와 관련된 기술 서비스
○ Logistics services: 화물 운송, 저장, 일정관리, 물류 서비스 구매 및 조달 등과 관련된 서비스
○ Asset management services: 자산 및 자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활동 또는 전략적인 투자활동과 관련된 투자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Other services: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다른 서비스 활동. 이 경우 그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5) 호주 국세청은 no payment 거래를 다음과 같이 20개로 구분하고 있음
○ Company shares / Contract manufacturing / Contractualinterests / Deposits / investment assets / Derivative portfolio / Insurance policies/Insurance recapitalisation / Intellectual property / intangibles/Interests in trust, partnership or other entity type/Loan assets / Loan liabilities/Marketing hubs / Real property/Shared services/Shipping/Trading activities / Other assets / Other functions / Other liabilities / Other risks

6) 유무형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처분/해외특수관계자와 사이에의 서비스의 수정이나 기능의 교환(예를 들면, 정보기술, 보험, 물류, 마케팅, 무역, 재무 기능 등)/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위험의 교환 및 권리와 의무의 증가 및 감소

자료: 호주 국세청,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2) Section B: Financial arrangements

□ Section B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금융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금융계약에 대한 부채와 자본의 구분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금융계약은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영구채 발행 및 투자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맺어진 계약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Ⅲ-10〉 IDS Section B의 세부항목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19) - 금융계약의 자본 부채 구분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된 금융계약이 부채인지 아니면 자본인지에 대한 구분	○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영구채 발행 및 투자와 같은 금융 거래를 해외 특수관계자와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평균액을 기입 함 ○ 기입시 금융계약을 세무상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함 ○ 한편 세무상 자본과 부채의 구분은 Division 974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에 따름
문항 (20) - 금융계약의 평가	○ 동 질문은 금융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평가하는 세무상 방법을 정한 일명, TOFA(the taxation of financial arrangements) rules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적용되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임	○ TOFA는 납세자의 형태에 따라 규모 등에 따라 의무적용대상 납세자를 정하고 있음 ○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Fair value method – Foreign exchange retranslation method(qualifying foreign exchange account(s) election) – Reliance on financial reports method – Foreign exchange retranslation method(general election) – Hedging financial arrangements method

자료: 호주 국세청, I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라.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 호주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피지배외국법인(CFC) 등 특정 외국법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외국에서 호주와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가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호주 거주자에게 과세함

□ SECTION C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Ⅲ-11〉 IDS Section C의 세부항목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1) -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	○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여기서 말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의 지분을을 1% 이상 보유한 실체(5인 이하여야 함)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직간접적으로로 외국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권리를 가진 경우 – 해외기업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동 해외기업이 다른 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 지분소유비율에 관계없이 5인 이하의 호주 실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 한편,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가지 국가별로 나누어서 그 피지배외국법인의 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Listed countries: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 Specified countries: 조세피난처 – Other unlisted countries

〈표 Ⅲ-11〉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2) - 국가별 발생한 CFC소득	○ 국가별로 CFC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문항에 대해서는 세무상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ITAA 1936의 Section 456에서는 CFC 귀속소득을 호주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Listed countries는 호주와 유사한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어 CFC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호주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국가들로서,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 소재한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해서는 CFC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문항 22의 첫 번째 소문항은 CFC의 소득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한편 ITAA 1936 Section 457에서는 Unlisted countries였다가 현재 Listed countries나 호주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CFC 귀속소득을 호주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항 22의 두 번째 소문항은 현재는 Listed countries에 소재하거나 호주 거주자이지만, 과거 Unlisted countries에 소재한 경우에 CFC 제도로 인해 호주 납세자에게 귀속된 CFC의 소득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문항 (23) - CFC의 소득분배	○ CFC가 이윤을 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 Unlisted countries에 있는 CFC가 사업연도 중에 직간접적으로 이윤을 분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YES/NO 선택 문항
문항 (24) - CFC의 비과세-비면제소득[1)]	○ 해외지점 혹은 CFC에서 발생한 비과세-비면제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재	○ 호주세법에서는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면제소득(exempt income), 그리고 비과세-비면제 소득(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으로 구분함 – 비과세-비면제 소득은 과세대상소득도 아니고 면제소득도 아닌 소득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 동 소득과 관련된 비용공제에 허용되지 않는 소득임

〈표 Ⅲ-11〉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 ITAA 1936 Section 23AH는 호주에 거주하는 기업의 국외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그 소득은 대부분 과세가 면제되며(ITAA36 s23AH), 이는 비과세-비면제 소득에 해당함 – 한편 정부가 제시한 특정 국가 목록에 있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적극적 사업소득기준(active income test)을 통과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24번 문항에서는 해외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 중 ITAA 1936 Section 23AH에 의해서 호주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ITAA 1936 Section 23AI는 CFC의 소득을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발생 당시에 과세하고 소득이 거주지 국가로 환수될 때 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CFC에 귀속되어 과세된 소득은 소득의 국내 이전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비과세-비면제 소득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24번 문항에서는 해외 CFC에서 발생한 소득 중 IITAA 1936 Section 23AI에서 말하는 CFC에 이미 귀속되어 과세된 소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ITAA 1936 Section 23AJ는 비거주자가 호주 거주자인 기업에게 지급한 배당으로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인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호주의 과세대상 소득(AI)에 포함하지 않으며(ITAA36 s 23AJ), 이는 비과세-비면제 소득에 해당함 – 여기서 직접투자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함. 배당을 수취한 자가 신탁관리자나 파트너의 자격으로 배당을 수취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24번 문항에서는 해외 CFC에서 발생한 소득 중 IITAA 1936 Section 23AJ에서 말하는 CFC에 피지배 외국법인이 호주 회사에 지급한 과점주주 배당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표 Ⅲ-11〉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5) - 공제가능 부채비용	○ 해외 비과세-비면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부채관련 비용을 기입하도록 함	○ ITAA 1997 Section 25-90에서는 해외 비과세-비면제 소득과 관련하여 공제 가능한 손실을 열거하고 있는데, 기업이 발행한 부채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됨[2)] ○ 25번 문항은 해외 비과세-비면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부채관련 비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문항 (26) - 지분의 매각	○ 해외 기업의 지분을 매각한 경우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함	○ 해외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이익이나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익 및 손실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문항 (27) - 유형자산 등의 이전	○ 유형자산, 현금 또는 서비스를 해외(호주 비거주) 신탁에 이전하였는지 여부	○ 신고 대상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직간접적으로 유형자산, 현금 또는 서비스를 호주 비거주 신탁에 이전한 적이 있는지 여부기재 ○ 가장 큰 거래금액 3가지를 뽑아서 그 금액을 적고, 신탁에 대한 이전과 관련된 세금 면제 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문항 (28) - 해외 신탁의 소유 여부	○ 납세자가 해외 신탁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호주 비거주 신탁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거나 당해 연도 비거주 신탁의 이익 또는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가졌는가에 대해 YES/NO 선택해야함
문항 (29) - 해외 혼성체의 소유 여부	○ 해외 혼성체의 소유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 해외 혼성 합자회사(A foreign hybrid limited partnership)의 출자 조합원(partner)이거나 해외 혼성체(A foreign hybrid company)의 주주였는지 여부와 그러한 혼성체들의 개수 및 순이익의 지분 해당액을 기재하도록 함

주: 1) 상세내역의 호주세법과 관련된 내역은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 한국조세연구원, 2012를 참조하였음

2)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25-90 Deduction relating to foreign 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 : An Australian entity can deduct an amount of loss or outgoing from its assessable income for an income year if (a) the amount is incurred by the entity in deriving income from a foreign source; and (b) the income is 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 under section 23AI, 23AJ or 23AK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and (c) the amount is a cost in relation to a *debt interest issued by the entity that is covered by paragraph (1)(a) of the definition of debt deduction

자료: 호주 국세청,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마. 기타 서식

1) Section D: Thin capitalisation

□ 동 섹션은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과소자본세제는 기업체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 기재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 법인들의 계산 방식 및 재무 정보

□ 이와 관련된 상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Ⅲ-12〉 IDS Section D의 세부항목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30) - (31)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 여부(31) 및 적용 여부(30)에 대한 문항	○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동 section의 문항을 모두 패스함 ○ Subdivision 820-FB of the ITAA 1997에서 연결그룹(a consolidated group), MEC group(Multiple Entry Consolidated group), 개별기업의 한 부분과 같이 취급하는 호주 기업은 동 section의 문항을 모두 패스함 ○ 이하 문항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했다는 가정하에 답변하는 것임
문항 (32) - (33) 기업체의 종류	○ 과소자본세제는 기업체의 종류(entity type)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	○ 과소자본 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간주하는 이자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와 최소 자본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기업체의 종류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짐 ○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업체 종류를 기입하도록 함 ○ 기업체를 법에서 정한 예금 수취 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 이하 'ADI')과 아닌 것(non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이하 'non- ADI'))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음 ○ 당해 사업연도 중 일반 법인에서 금융법인으로 전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함

〈표 Ⅲ-12〉의 계속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34) - (39) 과소자본세제 계산방식 및 재무정보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 법인들의 계산 방식 및 재무 정보(34~37)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test 적용 여부(38~ 39)에 대한 문항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평균 자본 가치를 산정한 방법을 기재함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 기업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함 – 사업연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전 부채 관련 비용 – 호주 비거주자로부터 투자된 부채와 관련된 비용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부채 관련 비용 ○ ADI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보 및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소자본세제 산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평균자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본, 위험가중평균 자산 등[1)] ○ ADI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보 및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소자본세제 산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평균자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본, 위험가중평균 자산 등[2)]

주: 1) All ADI entities: (Adjusted) average equity capital, Safe harbour capital amount, Equity capital shortfall amount Outward investing
ADI: Average value of risk weighted assets, Equity capital attributable to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s), Average value of risk weighted assets attributable to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s),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equity, Tier 1 prudential capital deductions
Inward investing ADI: Average of risk weighted assets attributable to Australian permanent establishment(s), Average value of dotation capita

2) All non-ADI entities: Average value of assets, Asset revaluation amount for thin capitalisation purposes, Safe harbour debt amount, Excess debt amount, Average value of non-debt liabilities,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debt,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equity,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excess amount, Average value of excluded equity interests
Financial entity: Average zero capital amount, Average on-lent amount
Outward investing entity: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equity,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debt

자료: 호주 국세청,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2) Section E: Financial Service Entities

□ 동 섹션은 Part IIIB of the ITAA 1936이 적용되는 외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Part IIIB of the ITAA 1936은 외국은행 지점과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한해서는 지점을 본점과 구분하여 독립된 주체로 보는 특별규정임[24)]

□ 한편, 동 섹션은 Offshore Banking Unit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Ⅲ-13〉 IDS Section E의 세부항목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40) 외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점	○ Part IIIB of the ITAA 1936이 적용되는 외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보기재	○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분기별 평균 명목 차입액 – 명목 이자 지급액(단, Offshore Banking Unit의 Offshore Banking 업무로 인한 금액은 제외) – 명목 이자 지급액(Offshore Banking Unit의 Offshore Banking 업무로 인한 금액) – 이자 지급관련 원천징수액
문항 (41) Offshore Banking Unit 혹은 Offshore Banking Unit	○ Offshore Banking Unit 혹은 Offshore Banking Unit을 포함한 연결 그룹의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본 문항은 Offshore Banking Unit과 관련된 세법 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질문은 Offshore Banking Unit의 업무를 9개로 나누어서 각각 과세소득, 순손익,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과세소득을 기록하도록 하게함 – 9개로 구분된 업무는 Borrowing, Lending, Guarantee type, Trading, Eligible contract, Investment, Advisory, Hedging, Other임

자료: 호주 국세청, I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24)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 한국조세연구원, 2012

3) Section F: Miscellaneous

□ 42번 문항은 사업연도 동안 해외 도관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이나 반대로 해외 도관으로 나누어준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43번 문항은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채 지급된 과점주주 배당액이 있는지 여부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44번 문항은 사업연도 동안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면제된 사유를 법에서 정한 3가지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중과세조정협정을 맺은 8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그 국가

○ Section 128F에 의한 면제

○ Section 128FA에 의한 면제

4) Section G: Taxpayer's declaration

□ 동 섹션은 미리 인쇄되어 있는 다음의 문구에 납세자가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문구: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호주에서 기업체는 과세표준 신고시 IDS와 관련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동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NAT 73345)

□ 한편 호주 국세청이 발간한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신고 시 세법에서 요구되는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승인된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신고기한까지 모든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연신고 가산세(Penalty for failing to lodge a document on time)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기에 추가적으로 KPMG이 2012년에 발간한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Australia』에서는 IDS의 미제출(failure to submit)뿐 아니라 허위기재(failure to prepare) 시에도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음

□ 지연신고 가산세는 170호주달러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지연신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산세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호주 국세청에 밝힌 가산세 적용 예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Ⅲ-14〉 지연신고 가산세

(단위: 호주달러)

지연기간	소규모 기업	중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
28 days or less	170	340	850
29 to 56 days	340	680	1,700
57 to 84 days	510	1,020	2,550
85 to 112 days	680	1,360	3,400
113 days or more	850	1,700	4,250

자료: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4. 일본

□ 일본의 법인세 신고서 중 국제거래와 관련이 있는 서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국외 지배주주 등에 관한 부채이자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서

○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대상 금액 또는 개별 과세대상 금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

○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관련 명세서에 해당하는 국외 지배주주 등에 관한 부채이자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한 명세서는 제외 하고 나머지 두 명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25)]

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 대상금액 또는 개별 과세금액 계산 명세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에 유보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하는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내국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동 규정은 (i)외국자회사가 소재지에서 부담하는 법인세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아야 하고, (ii) 일본법인이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iii) 실제 적용하는 경우 단독 또는 동족주주 그룹에서 직간접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됨[26)]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 대상금액 명세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상황

○ 적용제외의 판정

○ 과세대상 금액 또는 개별 과세대상금액의 계산

□ 먼저, 특정 외국회사 등의 상황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주요 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률, 사업연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25) 각 명세서상 부표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나, 동 보고서상에서는 다루지 아니하였음

26) 세 가지 조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역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함

□ 적용제외의 판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적용제외 조건을 명세서상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연도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7)]

○ 사업기준: 특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해당 여부를 기재함

– 주식, 채권의 보유,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제공, 선박 및 항공기의 대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실체기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의 고정시설 유무를 기재함

– 특정 외국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또는 기타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관리지배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의 관리, 통제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기재함

– 특정 외국회사가 소재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통제, 운영하고 있을 것

○ 비관련자 기준: 거래의 종류, 거래에 따른 수익금액 또는 지출금액, 그리고 동 수입금액 또는 지출금액에서 비관련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을 기재함

– 도매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수운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주로 하면서 거래의 비관련자 비중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 소재지 기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활동 상황 기재

– 위 비관련자 기준이 적용되는 7개 업종 이외의 경우 본점 소재지국에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함

□ 과세대상 금액 계산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합산과세할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당기순익 및 당기순익에 가산할 금액과 차감할 금액 및 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액을 기재함

□ 한편 관련 정보 및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임

---

27)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 한국조세연구원, 2009를 참조함

나.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일본에서는 법인 또는 연결법인과 국외 관련자 사이에 거래를 한 경우 법인은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를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4 제5항 또는 제68조의 88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비관련자도 포함함

○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이 포함되는 법인이 각각 명세서를 모두 작성하도록 함

□ 동 명세서는 국외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과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구분됨

□ 국외 관련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관련자의 명칭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요 사업

○ 직원 수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국외 관련자가 소재한 국가의 통화로 기재함

○ 특수관계 구분

○ 조치법 제39조의 12 제1항 각호 또는 제39조의112 제1항 각호 및 제66조의4 제5항 또는 제68조의 88 제5항에 따른 구분

○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관련자의 주식뿐 아니라 국외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의 주식도 구분하여 기재함

○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등

– 국외 관련자의 사업연도, 영업수익 또는 매출, 운영비용 및 판매비와 관리비, 세전순익, 이익잉여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상황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를 재고자산거래, 용역제공, 유형자산임대, 무형자산임대, 대출 및 차입으로 구분함

○ 각 구분별로 받은 대가와 준 지불한 대가를 기입함

○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기재함

○ 사전확인 여부를 기재함

–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법인의 납세지 관할 국세청 또는 국외 관련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정상가격 사전확인 유무를 기재하도록 함

□ 동 명세서 제출시 생산 거점의 해외이전, 거래형태, 유형형태 변경, 합병 등의 구조조정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별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관련 정보 및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벨기에

가.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2008년 9월 1일부터 특정 법인은 관계회사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한 금액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보고대상 특정 법인이란 (i) 상장된 기업, (ii) 유럽금융 상품시장지령(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법인과 (iii) 벨기에 회사법에 따른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임

□ 반드시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i) 거래금액, (ii) 관계회사와의 관계 (iii) 법인의 재무상

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임

□ 그러나 국제거래 등을 보고하는 서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나. 조세피난처 거래[28)]

□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자에게 지급한 직·간접 금액을 모두 보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서식 제275F호를 작성하게 함

○ 거주자인 법인과 비거주자인 법인 모두 제출의무가 있음

○ 임차, 이자, 로열티, 매입재화나 자본이득에 대한 대가, 서비스, 수수료, 커미션, 중개료 등의 대금 지급 목적을 간단히 기술해야 함

□ 서식에 기재할 사항: 지급일자, 지급대상자의 이름(또는 납세자번호)과 주소, 지급목적, 지급금액 기재함

□ 보고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다른 서식과 함께 제출함

□ 직·간접 지급액: 전체 과세기간 동안 조세피난처에 있는 개인에게 지급한 총 지급액이 10만유로 이상인 경우 지급한 금액 전액을 보고해야 함

□ 보고대상 '조세피난처'에 대해 법과 서식의 작성방법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OECD의 정보교환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나 영세율 또는 낮은 세율[29)] (10% 이하)로 과세하는 국가를 의미함

○ 해당 과세기간 중 OECD의 정보교환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과 같음

---

28) http://www.minfin.fgov.be/portail2/fr/e-services/biztax/documentation-fiscalis.htm,

29) 벨기에 소득세법 제179RD/BITC 1992조에 낮은 세율 국가를 열거하고 있으며, 2년마다 업데이트 함

- OECD[30]에서 (i) 특정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고 (ii) 실제 그 국가의 제도운영을 평가하여 정보교환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31]함
- 법률 검토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국가: 버뮤다, 보츠와나, 케이만제도, 인도, 자메이카, 모나코, 파나마와 카타르의 8개국
- Peer Review 결과 승인되어 Global Forum의 승인을 기다리는 국가: 건지섬과 저지섬을 포함한 11개 국가임

○ 벨기에 소득세법 제179RD/BITC 1992조에 세율이 낮거나 부담하는 세금이 없는 국가(지역)를 열거하고 있으며, 2년마다 업데이트함

- 유럽의 9개국: 안도라, 맨섬,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건지섬, 저지섬, 제투섬과 샤크섬
- 캐리비언의 7개국: 앵귈라섬, 바하마,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세인트바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8개국: 바레인, 아부다비, 아지만, 두바이, 푸자이라, 라스알카이마, 샤르자와 움알카이와인
- 태평양의 5개국: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바누아투와 윌리스푸투나제도
- 몰디브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조세피난처 거래: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관련 비용을 불공제함[32]

30)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the OECD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의 지도하에 OECD의 PEER REVIEW GROUP에 의해 평가

31) 이러한 국가는 www.oecd.org/tax/transparency에서 확인할 수 있음

32) http://www.fiscuriosa.be/tax-topic-28122010.html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 제출대상, 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재무정보,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비교함[33)]

가. 제출대상

□ 국제거래와 관련해 국가마다 제출대상 서식과 각 서식의 제출자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며,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함

○ 미국의 경우 해외투자와 관련한 서식은 제5471호 서식이 있으며 하나의 서식 안에 주제마다 여러 섹션으로 구분하고 있음

○ 미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5472호 서식이 가장 일반적인 서식이며, 부인 가능 법인체에 대해서는 제8858호 서식을, 해외 파트너십은 제8865호 서식을 제출함

– 각 서식의 항목은 몇 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 호주의 경우는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이라는 하나의 명세서에 주제마다 섹션을 나누고 있는데, 해외투자는 Section C의 21~24번 문항, Section A의 18번 문항과 관련이 있음

---

33) 조사대상 주요국의 서식에는 자국 법령과 상황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 일본의 경우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상에 국외 관련자와 관련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벨기에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한 내역을 보고하는 서식이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와 비교해 서식의 종류는 많지만 서식 안에 포함된 내용은 오히려 적은 편임

〈표 Ⅳ-1〉 제출대상 서식의 종류

구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한국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국제거래명세서 ○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외출자 명세서 등
미국	○ 제5471호 서식(특정 외국기업과 관련된 미국인의 정보보고)	○ 제5472호 서식(25% 외국인 소유 미국회사나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관한 정보보고) ○ 제8858호 서식(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에 관한 미국인의 정보보고) ○ 제8865호 서식(해외 파트너십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보고) ○ 제1120호 서식(Schedule UTP)	
호주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C의 문항 21~24번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A의 문항 18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A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B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C
일본	○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금액 계산 명세서
벨기에	–	○ 조세피난처 거래 신고서	–

□ 호주, 벨기에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보고대상 거래의 금액 기준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미국과 일본은 없음

○ 우리나라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에 금액 기준이 있으나 국제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 금액이 없음

○ 호주는 2만호주달러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벨기에는 10만유로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주요국의 국제거래 서식의 제출의무자를 아래 표에서 정리함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제출대상을 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Ⅳ-2〉 제출의무자의 국제비교

구분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벨기에
국내기업 해외투자	○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나 행위가 있는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지분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법인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을 위해 자금지급하는 경우	○ 외국기업 주식의 10% 이상 보유 ○ 외국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의 이사나 임원인 미국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10%의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 ② 기존에 외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자가 10%의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는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③ 미국 주주로 간주되는 자 ④ 미국인이 되는 시점에 10%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게 된 자 ⑤ 10% 주식소유요건 미만으로 지분을 낮추기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미국인 ○ 회계기간 중 적어도 연속되는 30일 동안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은 미국인 ○ 과세연도 중 적어도 연속되는 30일 동안 피지배외국법인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주주	○ 호주거주자가 해외 법인에 지분 투자한 경우 작성 제출함 ○ 해외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 국외 관련자와 거래를 한 경우	–
국내기업 국제거래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자 ○ 단, 일부 서식은 제출 배제되는 금액한도가 있음	○ 직·간접 외국인 지분보유 정도가 25% 이상인 미국법인 ○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한 경우 ○ 기타 다른 서식의 제출대상은 위와 다름	○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국외 특수관계자와 금융계약을 맺은 경우	○ 국외 관련자와 거래를 한 경우	○ 지정 대상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0만유로 이상인 경우
조세 피난처 유보소득	○ 부담세액이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		○ 호주거주자가 조세피난처에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을 가진 경우	○ 요건을 만족한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를 가진 경우	

주: 1. 기본정보, 재무정보나 기타 항목에 대한 제출의무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비교표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서식의 제출의무자를 기재함. 자세한 내용은 각국의 조사내용을 참고

2. 정보보고 서식에 피지배회사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비교표에 추가했으나, 이와 관련해 별도의 서식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음

나. 서식의 정보

□ 미국과 호주는 관련 서식에서 국제거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시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무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함

○ 다만, 현지법인의 재무정보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상세히 요구하고 있음

○ 한편, 호주와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자와의 거래를 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요구함

□ 미국은 서식의 제출자나 대상 외국법인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외에 해당 외국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관한 정보도 요청함

1) 국제거래 유형별 세분화 정도

□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거래를 재화, 용역, 대차, 자본거래 등 크게 4~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나 미국, 호주와 벨기에는 국제거래 내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재하게 함

○ 미국은 국제거래를 통화거래와 비통화거래로 구분하고, 통화거래를 12가지 거래로 구분하여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액을 기재하게 함

– 통화거래는 주식 및 유형자산의 판매, 비용분담약정액, 임대료, 로열티, 중개수수료, 이자나 대여금 등의 12가지 거래로 구분

○ 호주는 국제거래를 15가지로 구분하여 관련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로열티 및 라이센스, 유형, 렌트 및 리스, 서비스, 파생, 자산유동화, 그 밖의 금융거래, 기타 상거래, 자본적 지출거래, 대가 없는 거래, 종업원 보수, 원가부담, 구조조정으로 구분함

○ 벨기에도 조세피난처 거래를 임차, 이자, 로열티, 매입재화나 자본이득에 대한 대가,

서비스, 수수료, 커미션, 중개료 등으로 구분함

〈표 Ⅳ-3〉 보고대상 국제거래 유형

구분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한국		○ 재화, 용역, 대차, 자본 거래로 구분하여 매출과 매입 ○ 대차잔액 ○ 주식의 기초부터 기말 변동 내역
미국	제5472호 서식(25% 외국인 소유 미국회사나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관한 정보보고)	○ 제출의무자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통화거래 • 현금유입: 주식 및 유형자산의 판매, 비용분담액, 임대료, 로열티, 중개수수료, 이자나 대여금 등 총 12가지 거래 • 현금유출: 주식 및 유형자산의 매입, 비용분담액, 임차료, 로열티, 중개수수료, 차입금이나 이자비용 등 12가지 거래 ○ 제출의무자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비통화거래 및 불완전보수
	제8858호 서식(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에 관한 미국인의 정보보고)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 부인 가능 법인체와 제출의무자 간 국제거래: 19가지 거래로 구분하여 각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재함 • 가산거래: 재고자산 및 자산권리의 판매, 특정 용역에 대한 보상, 수수료, 임대료, 로열티, 라이센스, 배당금, 이자수익과 기타 • 차감거래: 재고자산 매입, 유형자산 매입, 자산권리의 매입, 특정 용역의 매입대가, 수수료, 임차료, 로열티, 라이센스, 이자비용 • 대여: 대출 또는 차입
	제8865호 서식(해외 파트너십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보고)	○ CFP(피지배 해외파트너십)과 파트너 또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① 현금유입: 재고자산 및 재산권 판매, 기술, 경영, 엔지니어, 건설이나 유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입, 커미션, 입차료, 로열티와 라이센스, 배당금, 이자수익과 기타 ② 현금유출: 현금유입과 동일 거래형태이며 지급하는 부분 ③ 차입금 및 대여금
호주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유형, 로열티 및 라이센스, 렌트 및 리스, 서비스, 파생, 자산유동화, 그 밖의 금융거래, 기타 상거래, 자본적 지출거래, 대가 없는 거래, 종업원 보수, 원가부담, 구조조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거래금액 기입 ○ 특수관계자와의 금융계약으로 인한 이자부담분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정보 기입
일본		○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 유형을 재고자산, 용역, 유무형자산 임대, 대출 및 차입으로 구분하고 거래금액을 기재
벨기에		○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자에게 지급한 총 직·간접 지급액

주: 각 재무제표와 기본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의 본문 참조

□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호주와 벨기에는 조세피난처를 지정하고 서식에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게 함

○ 호주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의 수와 거래금액을 그 밖의 소재국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모든 거래유형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규모순으로 상위 3개 유형에 대해서는 구분 기재함

○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거래만 서식이 있으며, 기타 다른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 우리나라만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며, 호주나 일본은 국제거래 내역 옆에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문서화를 간단히 기재함

〈표 Ⅳ-4〉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비교

국가	별도 서식	내용
한국	○	○ 무형자산, 용역거래와 기타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서식이 존재 ○ 거래성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당 방법을 선택한 사유 등 기재
미국	×	–
호주	×	○ 국제거래 서식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문서화 정도를 기입
일본	×	○ 국제거래 서식에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정상가격 사전확인 여부를 기재함
벨기에	×	○ 없음

주: 각 재무제표와 기본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의 본문 참조

2)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

□ 미국과 호주는 국제거래 내역을 상세히 요청하는 반면, 국제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손익 정보를 요청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국제거래가 있는 자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손익, 세전이익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함

○ 미국은 정보가 필요한 거래를 세분화해서 해당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업형태(파트너십)를 제외하면 국제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손익정보를 요청하지 않음

□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정보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상세히 요청하고 있음

○ 미국은 해외 현지법인의 손익 정보에 로열티, 임대료, 라이센스, 수수료, 자본이득을 구분해서 기재하게 함

○ 미국은 해외 현지법인의 대차정보에 영업권, 창립비, 특허나 트레이드 마크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게 함

〈표 Ⅳ-5〉 제출대상 명세서상 재무정보 국제비교

구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제출	제출정보	제출	제출정보
한국	○	○ 해외현지법인의 요약 재무상황표, 요약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 매입,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	○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관비, 영업손익, 세전이익의 금액만 기재
미국	○	○ 외국법인 재무정보 ① 손익계산서: 수익(세분화되어 있음), 비용(세분화되어 있음)과 순이익 금액 ③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와 자본금액 기재. 세분화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음 ④ 이익잉여금: 매국 재무제표 및 미국 세무회계 기준에 맞춰 해외 이익잉여금과 순손익을 조정	×	○ 없음. 재무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대신 거래정보를 세분화함 ○ 단,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나 해외 파트너십과 거래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기재
호주	×	○ 없음	×	○ 없음. 재무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대신 거래정보를 세분화함
일본	○	○ 최근 매출, 운영비, 판관비, 세전순익, 이익잉여금에 관한 정보	×	○ 없음
벨기에	–	–	×	○ 없음. 재무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대신 지급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주: 각 재무제표와 기본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의 본문 참조

□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거래연속성 파악을 위한 참조번호를 기재하며, 외국법인의 정보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함

○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간 거래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기업의 납세자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의무자가 참조번호(Reference Id number)를 임의로 부여하여 기록하게 한 후, 매년 동일 번호를 사용하게 함

○ 외국기업의 장부와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이름과 위치, 장부와 거래기록의 보관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

다. 미제출에 대한 제재

□ 미국과 호주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 서식을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호주는 미신고한 거래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함

□ 우리나라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에 과세당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으로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서식의 가산세를 현행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서 '법인세신고기한'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하여 제출의무를 강화할 예정임

〈표 Ⅳ-6〉 주요국의 서식 관련 가산세

국가	서식종류	서식 제출기한	미제출가산세	불성실가산세
한국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1차) 법인세 신고기한	×	×
		2차) 과세당국의 제출 또는 보완요청일부터 60일	○	○
미국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
호주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
일본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
벨기에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함)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함)

주: 1. 미제출가산세는 납세자가 서식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의미함
2. 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서식을 제출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출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함
3.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서식의 가산세를 현행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서 '법인세신고기한'으로 변경하고 가산세 부과대상도 현행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에서 '10% 이상 보유한 자'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함
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의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따른 제출기한 60일이 경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
5. 일본의 경우 과세당국의 제출 또는 보완요청 후에 가산세 부과 여부는 불확실함

2. 시사점

가. 서식의 통합 및 상세 작성지침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거래 관련 서식의 종류가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많은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거래와 관련해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와 국외 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서식을 요청하고 있으며, CFC에 관해서도 총 9개의 서식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미국, 호주의 경우 국제거래와 관련된 서식을 통합하여 납세자가 하나 정도의 서식을 작성하면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큰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이 서식 뒷부분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서식 작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이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러므로 비교 대상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작성 서식의 종류도 많고 작성방법에 대한 지침도 상세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서식작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의 중복입력과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제 거래 서식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상세한 작성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국제거래 명세서

□ 비교 대상국가의 국제거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조세피난처 유무나 거래유형에 따라 보다 상세히 구분되고 있으며, 거래 대상 특수관계인의 재무정보는 요청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국제거래 서식에서 거래 유형을 세분화한다면,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 국제거래 상대방의 소재지에 따른 세분화

□ 호주와 벨기에와 같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매년 지정하고 호주는 국제거래 서식에 조세피난처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만 국제거래 서식을 제출하게 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피난처로 볼 수 있는 국가에 소재한 자와의 구체적인 거래정보와 기업정보 등을 그 밖의 지역과 구분하여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국제거래 유형별 세분화

□ 보고대상 국제거래를 보다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보고대상 거래를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차거래 등 4~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는 유형자산의 판매, 저작권의 판매, 로열티수입, 수수료수익, 배당금 등 12~15가지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음

□ 한편, 국제거래정보를 세분화하여 신고하는 것에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면,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자와의 거래만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간소화

□ 호주의 경우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서, 관련 문서화의 정도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재하게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는 서식상 코드화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그 정보를 기입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과 같이 별도의 서식이나 신고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그 대신 관련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가산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는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근거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는 대신에 국제거래 명세서상 주요 특수

관계자의 내역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는 문서를 모두 갖추고 있고,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정상가격 관련 문서화 정도의 추가

□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문서화가 가산세 감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문서화에 관한 정보를 관련 서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문서화 여부는 서식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나 호주나 여러 OECD 국가는 문서화 여부를 법인세 신고서에 표기하게 함

○ 사전 문서화 여부를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는 서식에 포함시키거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에 기재한 방법과 문서를 통해 입증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 문서화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및 정보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식별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①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사용하거나 ②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통해 식별함

□ 한편 내국법인이 직접투자하지 않은 국외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만을 통해 식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식별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내국법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신고기일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국외 상황에 의해 현지 국가의 납세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그러므로 여러 기간에 걸친 외국기업의 거래 및 재무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의 고유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즉, 납세자가 외국기업의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하게 하지만 고유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Reference ID number와 같이 납세자가 임의로 매년 해당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한 번호를 기입하게 함

– 이를 통해 특정 외국기업의 여러 기간에 걸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이나 지점, 기업 장부의 위치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필요 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은 장부를 기록하는 장소, 장부를 보관하는 장소와 관계자 연락처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함

마.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방안

1) 제재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점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서식을 제출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정확하고 완전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우리나라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나,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보완요구 포함) 요구에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었음

○ 한편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조사대상 주요국(미국, 호주) 대부분이 미제출이나 불완전한 신고에 따른 제재가 있음

○ 미국은 모든 국제거래 서식의 미제출이나 부정확한 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

○ 벨기에의 경우 서식제출의 대상자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은 반면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강력함

□ 다만 현행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마련, 납세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의 사전검토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납세자의 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감소(전자신고)

□ 국제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전자신고 대상이나 납세자가 일부 외국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전자신고를 포기[34]하고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전자신고의 포기는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증가시키고, 불완전한 정보입력은 과세당국의 정보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실패로 인해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국가의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신고기한 내에 자료수집이 어려운 거래처에 대해서는 미국의 Reference ID number와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34) 실무상 국제거래 서식과 관련하여 전자신고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국제거래 서식의 전자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호주나 미국과 같이 '예 또는 아니오' 방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활용하면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미국의 제5472호 서식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과 재화의 원가 차이, 외국모법인의 비용분담 약정 체결 여부 등에 대한 YES/NO 질문

□ 동시에 기한 내 자료 수집이 어려운 거래처의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에 보고한 후 일정기한 내에 추가적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 정보의 활용방안

□ 자료의 수집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정보를 과세당국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1) 세원관리에 활용

□ 정확한 국제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국세청의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의 분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국세청은 2010년부터 세원 양성화와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를 구축하고 가동 중에 있음[35)]

– 세무신고자료, 기타 행정자료와 국 · 내외 기업의 재무정보 등 전체 재무자료를 통합하는 전산을 구축하여 국내외 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주요 구축자료는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의 재무자료 일체와 한국투자기업을 포함한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임

• 국내법인의 재무자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의 금감원자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주석, 지분공시와 주요현황 등 기업 관련 자료

35) 국세청, http://nts.go.kr/news/

•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국외기업 재무제표, 임원, 자회사, 주주, M&A 사항 등 최신 기업자료

○ ICAS는 해외투자와 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기업 재무자료를 폭넓게 활용함

–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분석 시 납세자가 정상가격 입증을 위해 제출한 비교대상 자료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음

○ 또한, ICAS는 국제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역외 탈세거래와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활용됨[36]

– 실제 2013년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원시자료를 확보한 후 조세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는 데 ICAS가 활용됨[37]

□ 장기적으로 다양한 세무신고자료와 외부자료를 활용해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 미국과 영국은 조세격차(TAX GAP)[38]를 통해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하는 장기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납세자의 신고내역과 기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은 조세격차 관련 보고서[39]에서 조세격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 중 과세당국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보고 서식을 활용함

– 실제 미국 과세당국은 법인과 개인납세자의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

36) 국세청이 발표한 'ICAS 활용이 가능한 전형적 사례'에 따르면 ICAS는 해외현지법인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수익을 은닉한 사례, 지분 또는 대부투자를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유출하고 탈세한 사례분석,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분석 등에 활용됨

37)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38) 조세격차란 납세자가 특정 과세연도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과 실제 납부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는 납세자가 특정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의미함. 미국은 1963년부터 현재까지 조세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보완하고 있으며, 조세격차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함

39)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07) 참조

해 제5471호 서식(해외투자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해외 피지배회사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1120F호 서식의 일부 정보를 추가함

2) 현행 서식의 적극적인 활용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3개국 중 국제거래 등에 관해 서식을 두고 있는 19개 국가 중 하나임

□ 우리나라가 이미 시행 중인 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서식 작성에 드는 납세자의 협력비용만 증가하고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은 줄이지 못해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서식의 개편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등의 국제거래 서식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해외투자 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확하고 완전성 있는 정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외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국내기업, 주요 거래대상 국가를 변경한 국내기업, 본업과 관련 없는 업종과 거래규모가 큰 국내기업, 외국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기업의 손익 대부분이 국내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고 손익이 지나치게 높거나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외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국내기업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데 활용해야 함

– 예를 들어, 조세회피가 문제가 된 후 갑자기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현지법인을 청산하고 다른 국가에 유사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특정 국가에 대한 거래규모를 갑자기 축소하는 행위 등도 관련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한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여러 연도에 걸친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금액이나 투자금액의 변동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 「ICAS활용이 가능한 전형적 사례」, 2010. 1. 15.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3」 (상세본)

김유찬 · 정지선,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세연구』 제9-2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김유찬 · 나성길 · 정평조,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에서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6.

김형준 · 박명호,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 한국조세연구원, 2009.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 한국조세연구원, 2012.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2」

_____,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

CPA Australia, 「Income tax, BAS and accounting fundamentals」, 2011.

Deloitte, *2012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2012.

IRS, Instructions for From 5471, 2012. 12.

_____, Instructions for From 5472, 2012. 12.

_____, Instructions for From 8858, 2012. 12.

_____, Instructions for From 8865, 2012. 12.

_____, Instructions for Schedule UTP (Form 1120), 2012.

IRS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ducing the Federal Tax Gap -A Report on Improving Voluntary Compliance," 2007. 8. 2

KPMG,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Australia," 2012.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벨기에 국세청, http://www.minfin.fgov.be/
삼일인포마인, http://www.samili.com/
일본 국세청, www.nta.go.jp
호주 국세청, www.ato.gov.au
OECD,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
IBFD, http://www.ibfd.org/

[부록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부표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호주	없음. 단, 세무조사위험과 가산세를 경감시키기 위해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신고 기한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	○ 과거 서식) Schedule 25A: 거래형태, 금액, 관련 국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의 수, 증빙자료의 종류, 이전가격 방법 ○ 개정 서식)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 제출기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부과함	적시성 있게 문서화한 경우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
오스트리아	○ 법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단,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일반적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함	
벨기에	○ 법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단,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음 ○ 적시성 없는 문서화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불충분한 문서화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를 부과	없음	제출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	○ 2008년 9월 1일부터 특정한 법인에 대해서만 관계회사 거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2010년 1월 1일부터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조세피난처'에 지급한 모든 직접, 간접적인 지출을 보고함 (Form 275F) ○ 제출기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미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가 부과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반면, 악의성 있는 신고오류에 대해서는 중과함
캐나다	○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 위반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제출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	○ Form T106: 100만캐나다 달러 이상되는 거래에 대한 거래 형태, 금액, 관계회사, 참여한 국가, 사용한 이전가격 방법, 적시성 있는 문서화 여부, 재무정보	이전가격 조정 시 10% 가산세 부과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납세자의 성실한 노력이 인정되면 가산세가 100% 경감됨
칠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일반적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체코	○ 법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단, 2011년 1월 1일부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음	없음	없음. 세무조사 시 관련문서를 요구함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부표 1〉의 계속

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덴마크	○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다섯 가지 사항을 포함해 이전가격에 관해 문서화할 것을 법으로 정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제출요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	○ Form 05.021: 모든 관계회사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제출기한: 과세표준신고기한	○ 부정확한 정보보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 미신고 가산세 부과	과세당국의 요구에 맞게 문서화된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경감
핀란드	○ 2007년부터 여섯 가지 사항을 포함해 이전가격에 관해 문서화할 것을 법으로 정함	매년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해야 함	제출요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	○ 관계회사 거래의 존재, 이전가격 문서화 여부를 세무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 Form 78: 기능, 수익성과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 제출기한: 과세표준신고기한	○ 이전가격 문서 제출요구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 요구 건수당 25천유로 ○ 일반적인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됨	○ 건별로 가산세 경감이 가능할 수 있음
프랑스	2010년부터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2010년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때	없음	적시성 있게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및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없음
독일	법령에서 적시성 있는 문서화를 요구함	○ 특별거래: 발생시점에 문서구비 ○ 일상적인 거래: 기한 없음	○ 특별거래: 거래발생 후 30일 이내 ○ 일상적인 거래: 조사관 요구가 있는 때부터 60일 이내	없음	○ 문서 미제출가산세 ○ 문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 ○ 이전가격의 적정성 및 국제거래 대상자가 불명확할 때 가산세 부과	적시에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가 경감됨
그리스	연간 매출액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문서화가 요구됨	없음	과세당국의 서면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	○ 국제거래 목록: 거래금액, 성격,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15일 내에 제출	○ 보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금액에 가산세 부과 ○ 충분히 문서화되지 않은 국제거래 금액에도 가산세 부과	없음
헝가리	2012년부터 모든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	국제거래에 대해 적절히 문서화 했다는 사실을 세무신고서에 기재	○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 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이전가격 조정 시 일반적인 가산세 적용	없음

〈부표 1〉의 계속

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아일랜드	○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문서화를 요구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당국의 제출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이스라엘	12가지 필수사항을 포함한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	없음	과세당국의 제출요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	○ Form 1385: 모든 특수관계 거래, 거래금액, 조건과 국제거래 요건과 이전가격에 대한 내용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	없음
이탈리아	○ 강제적인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문서화를 장려함 ○ 문서화한 경우 가산세 경감(penalty protection)	가산세 부과를 피하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준비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후 15일 이내	○ 국제거래가 있는 비거주자와의 관계를 세무신고서에 포함 ○ 가산세 경감을 목적으로 세무당국과 적절한 문서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 적절한 문서화를 과세당국과 사전 협의한 경우 가산세 면제
일본	세무조사 기간동안 지체없이 이전가격과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없음	요구 즉시 제출	○ Schedule 17(4): 외국 관계회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거래의 이전가격 방법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대한민국	○ 강제적인 문서화 요구 없음 ○ 문서화한 경우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산세 경감	없음. 단, 문서화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	○ 이전가격방법신고서 ○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이전가격 조정 시 일반적인 가산세 적용	○ 적정한 문서가 있는 등 일정 요건 만족 시 미신고 가산세 경감
룩셈부르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멕시코	1997년부터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적정가격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화를 요구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때	○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를 보고하는 서식: 관계회사, 관련 거래, 적용한 이전가격 방법, 국제제거래와 문서화에 관한 질문서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문서화가 적절하게 수행된 경우 가산세를 일부 감면
네덜란드	이전가격에 관한 특별한 문서화 규정은 없음	거래발생 시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때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문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가능
뉴질랜드	없음	없음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문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 가능

〈부표 1〉의 계속

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노르웨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13가지 필수사항을 포함한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8년부터 적용)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후 45일 이내	○ 일정 거래금액 이상인 납세자에 한해 특수관계인 거래와 거래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신고시 보고	과세당국에 이전가격에 관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 제공시 가산세 부과	없음
폴란드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납세자에 한해 문서화가 요구됨	없음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	○ 문서화 대상인지 여부 보고 ○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국제거래를 보고하는 형식 있음	적절하게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강도 높은 가산세 부과	없음
포르투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이 이상인 납세자에 한해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7개월 15일)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는 때	○ 국제거래 대상 관계회사 ○ 국제거래 금액 ○ 이전가격방법 ○ 해당 거래에 대해 적시성 있게 문서화되었는지 보고	○ 적시성 있는 이전가격 문서화 실패에 대한 가산세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보고에 대해 가산세 부과	특정 상황에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음
슬로바키아	2009년 1월 22일부터 IFRS 적용 납세자와 IFRS 미적용 납세자를 구분하여 문서화를 요구함	해당 과세기간 종료 전까지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	국제거래가 있는 관계회사와 거래 금액을 보고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스페인	○ 문서화를 요구함(단, 일부 거래의 경우 25만유로 이하 거래는 문서화 대상에서 제외) ○ 단,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당국 요구가 있는 때	○ 관계회사에 관한 정보요구 – 납세자의 경영관리팀 – 납세자가 보유한 관계회사 지분 – 납세자의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 ○ 관계회사와 국제거래 – 관계회사의 이름 및 법인형태 – 관계회사의 등록번호 – 특수관계 형태 – 관계회사의 소재국 – 거래형태, 거래성격(수익 또는 지출), 이전가격평가방법, 거래금액 ○ 과세당국은 보고된 정보를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	○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문서화로 적정한 이전가격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고대상 정보를 생략한 경우 생략된 정보 건별로 가산세를 부과 ○ 그 밖의 경우 이전가격 조정액의 15%를 가산세로 부과	가능
스웨덴	2007년부터 문서화 요구	없음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는 때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부과됨	없음

〈부표 1〉의 계속

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스위스	○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를 갖춰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음 ○ 단, 사업모델의 변동, 저세율 국가의 역외회사와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서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부과됨	없음
터키	2007년부터 적시성 있는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서화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존재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이전가격에 관한 서식 ○ 특수관계인에 관한 서식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영국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6년간 관련 정보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있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없음	○ 적시성 있는 문서화에 실패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이전가격 조정 시 일반적인 가산세가 부과됨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미국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과세당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Forms 5471 및 5472: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Cost Sharing Statement: 특수관계인의 무형개발비 지출액 ○ UTP(Uncertain Tax Positions): 일부 납세자에 한해 UTP를 과세당국에 보고	이전가격 조정 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적절하게 문서화되었고 제출기한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주: 1. 일반적인 가산세란 과소신고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미신고, 무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의미하며, 국가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은 차이가 있음

자료: Deloitte, *2012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2012. 참조

[부록 2] 미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Form **5471**
(Rev. December 2012)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 **For more information about Form 5471, see *www.irs.gov/form5471***
Information furnished for the foreign corporation's annual accounting period (tax year required by section 898) (see instructions) beginning , 20 , and ending , 20

OMB No. 1545-0704

Attachment Sequence No. **121**

Name of person filing this return	**A Identifying number**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or P.O. box number if mail is not delivered to street address)	**B** Category of filer (See instructions. Check applicable box(es)): 1 (repealed) 2 ☐ 3 ☐ 4 ☐ 5 ☐
City or town, state, and ZIP code	**C** Enter the total percentage of the foreign corporation's voting stock you owned at the end of its annual accounting period %

Filer's tax year beginning , 20 , and ending , 20

D Person(s) on whose behalf this information return is filed:

(1) Name	(2) Address	(3) Identifying number	(4) Check applicable box(es)		
			Shareholder	Officer	Director

Important: *Fill in all applicable lines and schedules. All information **must** be in English. All amounts **must** be stated in U.S. dollars unless otherwise indicated.*

1a Name and address of foreign corporation	**b(1)**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f any
	b(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c Country under whose laws incorporated

d Date of incorporation	**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f** Principal business activity code number	**g** Principal business activity	**h** Functional currency

2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foreign corporation's accounting period stated above.

a Name, address, and identifying number of branch office or agent (if any) in the United States	**b** If a U.S. income tax return was filed, enter:	
	(i) Taxable income or (loss)	(ii) U.S. income tax paid (after all credits)
c Name and address of foreign corporation's statutory or resident agent in country of incorporation	**d**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rporate department, if applicable) of person (or persons) with custody of the books and records of the foreign corporation, and the location of such books and records, if different	

Schedule A **Stock of the Foreign Corporation**

(a) Description of each class of stock	(b) Number of shares issued and outstanding	
	(i) Beginning of annual accounting period	(ii) End of annual accounting period

Form 5471 (Rev. 12-2012) Page **2**

Schedule B **U.S. Shareholders of Foreign Corporation** (see instructions)

(a) Name, address, and identifying number of shareholder	(b) Description of each class of stock held by shareholder. **Note:** *This description should match the corresponding description entered in Schedule A, column (a).*	(c) Number of shares held at beginning of annual accounting period	(d) Number of shares held at end of annual accounting period	(e) Pro rata share of subpart F income (enter as a percentage)

Schedule C **Income Statement** (see instructions)

Important: *Report all information in functional currency in accordance with U.S. GAAP. Also, report each amount in U.S. dollars translated from functional currency (using GAAP translation rules). However, if the functional currency is the U.S. dollar, complete only the U.S. Dollars column. See instructions for special rules for DASTM corporations.*

				Functional Currency	U.S. Dollars
Income	1a	Gross receipts or sales	1a		
	b	Returns and allowances	1b		
	c	Subtract line 1b from line 1a	1c		
	2	Cost of goods sold	2		
	3	Gross profit (subtract line 2 from line 1c)	3		
	4	Dividends	4		
	5	Interest	5		
	6a	Gross rents	6a		
	b	Gross royalties and license fees	6b		
	7	Net gain or (loss) on sale of capital assets	7		
	8	Other income (attach statement)	8		
	9	Total income (add lines 3 through 8)	9		
Deductions	10	Compensation not deducted elsewhere	10		
	11a	Rents	11a		
	b	Royalties and license fees	11b		
	12	Interest	12		
	13	Depreciation not deducted elsewhere	13		
	14	Depletion	14		
	15	Taxes (exclude provision for income, war profits, and excess profits taxes)	15		
	16	Other deductions (attach statement—exclude provision for income, war profits, and excess profits taxes)	16		
	17	Total deductions (add lines 10 through 16)	17		
Net Income	18	Net income or (loss) before extraordinary items, prior period adjustments, and the provision for income, war profits, and excess profits taxes (subtract line 17 from line 9)	18		
	19	Extraordinary items and prior period adjustments (see instructions)	19		
	20	Provision for income, war profits, and excess profits taxes (see instructions)	20		
	21	Current year net income or (loss) per books (combine lines 18 through 20)	21		

Form 5471 (Rev. 12-2012) Page 3

Schedule E **Income, War Profits, and Excess Profits Taxes Paid or Accrued** (see instructions)

	(a) Name of country or U.S. possession	Amount of tax (b) In foreign currency	(c) Conversion rate	(d) In U.S. dollars
1	U.S.			
2				
3				
4				
5				
6				
7				
8	Total ▶			

Schedule F **Balance Sheet**

Important: *Report all amounts in U.S. dollars prepared and translated in accordance with U.S. GAAP. See instructions for an exception for DASTM corporations.*

	Assets		(a) Beginning of annual accounting period	(b) End of annual accounting period
1	Cash	1		
2a	Trade notes and accounts receivable	2a		
b	Less allowance for bad debts	2b	( )	( )
3	Inventories	3		
4	Other current assets (attach statement)	4		
5	Loans to shareholders and other related persons	5		
6	Investment in subsidiaries (attach statement)	6		
7	Other investments (attach statement)	7		
8a	Buildings and other depreciable assets	8a		
b	Less accumulated depreciation	8b	( )	( )
9a	Depletable assets	9a		
b	Less accumulated depletion	9b	( )	( )
10	Land (net of any amortization)	10		
11	Intangible assets:			
a	Goodwill	11a		
b	Organization costs	11b		
c	Patents, trademarks, and other intangible assets	11c		
d	Less accumulated amortization for lines 11a, b, and c	11d	( )	( )
12	Other assets (attach statement)	12		
13	Total assets	13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14	Accounts payable	14		
15	Other current liabilities (attach statement)	15		
16	Loans from shareholders and other related persons	16		
17	Other liabilities (attach statement)	17		
18	Capital stock:			
a	Preferred stock	18a		
b	Common stock	18b		
19	Paid-in or capital surplus (attach reconciliation)	19		
20	Retained earnings	20		
21	Less cost of treasury stock	21	( )	( )
22	Total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22		

Schedule G Other Information

		Yes	No
1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corporation own at least a 10% interest, directly or indirectly, in any foreign partnership? If "Yes," see the instructions for required statement.	☐	☐
2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corporation own an interest in any trust?	☐	☐
3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corporation own any foreign entities that were disregarded as entities separate from their owners under Regulations sections 301.7701-2 and 301.7701-3 (see instructions)? If "Yes," you are generally required to attach Form 8858 for each entity (see instructions).	☐	☐
4	During the tax year, was the foreign corporation a participant in any cost sharing arrangement?	☐	☐
5	During the course of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corporation become a participant in any cost sharing arrangement?	☐	☐
6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corporation participate in any reportable transaction as defined in Regulations section 1.6011-4? If "Yes," attach Form(s) 8886 if required by Regulations section 1.6011-4(c)(3)(i)(G).	☐	☐
7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corporation pay or accrue any foreign tax that was disqualified for credit under section 901(m)?	☐	☐
8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corporation pay or accrue foreign taxes to which section 909 applies, or treat foreign taxes that were previously suspended under section 909 as no longer suspended?	☐	☐

Schedule H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see instructions)

Important: *Enter the amounts on lines 1 through 5c in* ***functional*** *currency.*

		Net Additions	Net Subtractions		
1	Current year net income or (loss) per foreign books of account			1	
2	Net adjustments made to line 1 to determine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according to U.S. financial and tax accounting standards (see instructions):				
a	Capital gains or losses				
b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c	Depletion				
d	Investment or incentive allowance				
e	Charges to statutory reserves				
f	Inventory adjustments				
g	Taxes				
h	Other (attach statement)				
3	Total net additions				
4	Total net subtractions				
5a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line 1 plus line 3 minus line 4)			5a	
b	DASTM gain or (loss) for foreign corporations that use DASTM (see instructions)			5b	
c	Combine lines 5a and 5b			5c	
d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in U.S. dollars (line 5c translated at the appropriate exchange rate as defined in section 989(b) and the related regulations (see instructions)) Enter exchange rate used for line 5d ▶			5d	

Schedule I Summary of Shareholder's Income From Foreign Corporation (see instructions)

If item D on page 1 is completed, a separate Schedule I must be filed for each Category 4 or 5 filer for whom reporting is furnished on this Form 5471. This schedule I is being completed for:

Name of U.S. shareholder ▶ Identifying number ▶

1	Subpart F income (line 38b, Worksheet A in the instructions)	1	
2	Earnings invested in U.S. property (line 17, Worksheet B in the instructions)	2	
3	Previously excluded subpart F income withdrawn from qualified investments (line 6b, Worksheet C in the instructions)	3	
4	Previously excluded export trade income withdrawn from investment in export trade assets (line 7b, Worksheet D in the instructions)	4	
5	Factoring income	5	
6	Total of lines 1 through 5. Enter here and on your income tax return. See instructions	6	
7	Dividends received (translated at spot rate on payment date under section 989(b)(1))	7	
8	Exchange gain or (loss) on a distribution of previously taxed income	8	

	Yes	No
• Was any income of the foreign corporation blocked?	☐	☐
• Did any such income become unblocked during the tax year (see section 964(b))?	☐	☐

If the answer to either question is "Yes," attach an explanation.

Form **5472**
(Rev. December 2012)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Information Return of a 25% Foreign-Owned U.S. Corporation or a Foreign Corporation Engaged in a U.S. Trade or Business

(Under Sections 6038A and 6038C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 **Information about Form 5472 and its separate instructions is at *www.irs.gov/form5472.***

For tax year of the reporting corporation beginning _____, _____, and ending _____, _____

Note. *Enter all information in English and money items in U.S. dollars.*

OMB No. 1545-0805

Part I Reporting Corporation (see instructions). All reporting corporations must complete Part I.

1a Name of reporting corporation	**1b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if a P.O. box, see instructions)	**1c** Total assets
City or town, state, and ZIP code (if a foreign address, see instructions)	$

1d Principal business activity ▶		**1e** Principal business activity code ▶
1f Total value of gross payments made or received (see instructions) reported on **this** Form 5472 $	**1g** Total number of Forms 5472 filed for the tax year	**1h** Total value of gross payments made or received (see instructions) reported on **all** Forms 5472 $

1i Check here if this is a consolidated filing of Form 5472 ▶ ☐	**1j** Country of incorporation	**1k** Country(ies) under whose laws the reporting corporation files an income tax return as a resident	**1l** Principal country(ies) where business is conducted

2 Check here if,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any foreign person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50% of **(a)** the total voting power of all classes of the stock of the reporting corporation entitled to vote, or **(b)** the total value of all classes of stock of the reporting corporation ▶ ☐

Part II 25% Foreign Shareholder (see instructions)

1a Name and address of 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1b(1)**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1b(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1c Principal country(ies) where business is conducted	**1d** Country of citizenship, organization, or incorporation	**1e** Country(ies) under whose laws the 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files an income tax return as a resident	
2a Name and address of 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2b(1)**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2b(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2c Principal country(ies) where business is conducted	**2d** Country of citizenship, organization, or incorporation	**2e** Country(ies) under whose laws the 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files an income tax return as a resident	
3a Name and address of ultimate in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3b(1)**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3b(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3c Principal country(ies) where business is conducted	**3d** Country of citizenship, organization, or incorporation	**3e** Country(ies) under whose laws the ultimate in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files an income tax return as a resident	
4a Name and address of ultimate in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4b(1)**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4b(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4c Principal country(ies) where business is conducted	**4d** Country of citizenship, organization, or incorporation	**4e** Country(ies) under whose laws the ultimate indirect 25% foreign shareholder files an income tax return as a resident	

Form 5472 (Rev. 12-2012) Page **2**

Part III **Related Party** (see instructions)
Check applicable box: Is the related party a ☐ foreign person or ☐ U.S. person?
All reporting corporations must complete this question and the rest of Part III.

1a Name and address of related party	1b(1)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1b(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1c Principal business activity ►	1d Principal business activity code ►

1e Relationship—Check boxes that apply: ☐ Related to reporting corporation ☐ Related to 25% foreign shareholder ☐ 25% foreign shareholder

1f Principal country(ies) where business is conducted	1g Country(ies) under whose laws the related party files an income tax return as a resident

Part IV **Monetary Transactions Between Reporting Corporations and Foreign Related Party** (see instructions)
Caution: *Part IV* ***must*** *be completed if the "foreign person" box is checked in the heading for Part III.*
If estimates are used, check here ► ☐

1	Sales of stock in trade (inventory)	1	
2	Sales of tangible property other than stock in trade	2	
3	Platform contribution transaction payments received	3	
4	Cost sharing transaction payments received	4	
5a	Rents received (for other than intangible property rights)	5a	
b	Royalties received (for other than intangible property rights)	5b	
6	Sales, leases, licenses, etc.,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e.g., patents, trademarks, secret formulas)	6	
7	Consideration received for technical, managerial, engineering, construction, scientific, or like services	7	
8	Commissions received	8	
9	Amounts borrowed (see instructions) a Beginning balance _____ b Ending balance or monthly average ►	9b	
10	Interest received	10	
11	Premiums received for insurance or reinsurance	11	
12	Other amounts received (see instructions)	12	
13	**Total.** Combine amounts on lines 1 through 12	13	
14	Purchases of stock in trade (inventory)	14	
15	Purchases of tangible property other than stock in trade	15	
16	Platform contribution transaction payments paid	16	
17	Cost sharing transaction payments paid	17	
18a	Rents paid (for other than intangible property rights)	18a	
b	Royalties paid (for other than intangible property rights)	18b	
19	Purchases, leases, licenses, etc.,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e.g., patents, trademarks, secret formulas)	19	
20	Consideration paid for technical, managerial, engineering, construction, scientific, or like services	20	
21	Commissions paid	21	
22	Amounts loaned (see instructions) a Beginning balance _____ b Ending balance or monthly average ►	22b	
23	Interest paid	23	
24	Premiums paid for insurance or reinsurance	24	
25	Other amounts paid (see instructions)	25	
26	**Total.** Combine amounts on lines 14 through 25	26	

Part V **Nonmonetary and Less-Than-Full Consideration Transactions Between the Reporting Corporation and the Foreign Related Party** (see instructions)
Describe these transactions on an attached separate sheet and check here. ► ☐

Part VI **Additional Information**
All reporting corporations must complete Part VI.

1	Does the reporting corporation import goods from a foreign related party?	☐ Yes	☐ No
2a	If "Yes," is the basis or inventory cost of the goods valued at greater than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goods? If "No," **do not** complete **b** and **c** below.	☐ Yes	☐ No
b	If "Yes," attach a statement explaining the reason or reasons for such difference.		
c	If the answers to questions 1 and 2a are "Yes," were the documents used to support this treatment of the imported goods in existence and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filing Form 5472?	☐ Yes	☐ No
3	During the tax year, was the foreign parent corporation a participant in any cost sharing arrangement?	☐ Yes	☐ No
4	During the course of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parent corporation become a participant in any cost sharing arrangement?	☐ Yes	☐ No

Form **8858**

(Rev. December 2012)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Disregarded Entities

► **Information about Form 8858 and its separate instructions is at *www.irs.gov/form8858*.**

Information furnished for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s annual accounting period (see instructions) beginning , 20 , and ending , 20

OMB No. 1545-1910

Attachment Sequence No. **140**

Name of person filing this return	**Filer's identifying number**
Number, street, and room or suite no. (or P.O. box number if mail is not delivered to street address)	
City or town, state, and ZIP code	
Filer's tax year beginning , 20 , and ending , 20	

Important: *Fill in all applicable lines and schedules. All information **must** be in English. All amounts **must** be stated in U.S. dollars unless otherwise indicated.*

1a Name and address of foreign disregarded entity	**b(1)**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b(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c Country(ies) under whose laws organized and entity type under local tax law	**d** Date(s) of organization	**e** Effective date as foreign disregarded entity

f If benefits under a U.S. tax treaty were claimed with respect to income of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enter the treaty and article number	**g** Country in which principal business activity is conducted	**h** Principal business activity	**i** Functional currency

2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s accounting period stated above.

a Name, address, and identifying number of branch office or agent (if any) in the United States	**b**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rporate department, if applicable) of person(s) with custody of the books and records of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and the location of such books and records, if different

3 For the **tax owner** of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if different from the filer) provide the following:

a Name and address	**b** Annual accounting period covered by the return (see instructions)	
	c(1)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c(2)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uctions)	
	d Country under whose laws organized	**e** Functional currency

4 For the **direct owner** of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if different from the tax owner) provide the following:

a Name and address	**b** Country under whose laws organized	
	c U.S. identifying number, if any	**d** Functional currency

5 Attach an organizational chart that identifies the name, placement, percentage of ownership, tax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ganization of all entities in the chain of ownership between the tax owner and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and the chain of ownership between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and each entity in which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has a 10% or more direct or indirect interest. See instructions.

Schedule C **Income Statement** (see instructions)

Important: *Report all information in functional currency in accordance with U.S. GAAP. Also, report each amount in U.S. dollars translated from functional currency (using GAAP translation rules or the average exchange rate determined under section 989(b)). If the functional currency is the U.S. dollar, complete only the U.S. Dollars column. See instructions for special rules for foreign disregarded entities that use DASTM.*

If you are using the average exchange rate (determined under section 989(b)), check the following box . . . . . ☐

			Functional Currency	U.S. Dollars
1	Gross receipts or sales (net of returns and allowances)	1		
2	Cost of goods sold	2		
3	Gross profit (subtract line 2 from line 1)	3		
4	Other income	4		
5	Total income (add lines 3 and 4)	5		
6	Total deductions	6		
7	Other adjustments	7		
8	Net income (loss) per books	8		

Schedule C-1 **Section 987 Gain or Loss Information**

			(a) Amount stated in functional currency of foreign disregarded entity	(b) Amount stated in functional currency of recipient
1	Remittances from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1		
2	Section 987 gain (loss) of recipient	2		

		Yes	No
3	Were all remittances from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treated as made to the direct owner?		
4	Did the tax owner change its method of accounting for section 987 gain or loss with respect to remittances from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during the tax year?		

Schedule F **Balance Sheet**

Important: *Report all amounts in U.S. dollars computed in functional currency and translated into U.S. dollars in accordance with U.S. GAAP. See instructions for an exception for foreign disregarded entities that use DASTM.*

	Assets		(a) Beginning of annual accounting period	(b) End of annual accounting period
1	Cash and other current assets	1		
2	Other assets	2		
3	Total assets	3		
	Liabilities and Owner's Equity			
4	Liabilities	4		
5	Owner's equity	5		
6	Total liabilities and owner's equity	6		

Schedule G **Other Information**

		Yes	No
1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own an interest in any trust?		
2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own at least a 10% interest, directly or indirectly, in any foreign partnership?		
3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only if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made its election to be treated as disregarded from its owner during the tax year:* Did the tax owner claim a loss with respect to stock or debt of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as a result of the election?		
4	If the interest in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is a separate unit under Reg. 1.1503(d)-1(b)(4) or part of a combined separate unit under Reg. 1.1503(d)-1(b)(4)(ii) does the separate unit or combined separate unit have a dual consolidated loss as defined in Reg. 1.1503(d)-1(b)(5)(ii)? If "Yes," enter the amount of the dual consolidated loss ▶ $ Answer question 5a.		

Schedule G **Other Information** *(continued)*

		Yes	No
5a	Was any portion of the dual consolidated loss in question 4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consolidated taxable income for the year? If "Yes," go to 5b. If "No," skip 5b and 5c		
b	Was this a permitted domestic use of the dual consolidated loss under Reg. 1.1503(d)-6? If "Yes," see instructions and skip 5c. If "No," go to 5c		
c	If this was not a permitted domestic use, was the dual consolidated loss used to compute consolidated taxable income as provided under Reg. 1.1503(d)-4?		
	If "Yes," enter the separate unit's contribution to the cumulative consolidated taxable income ("cumulative register") as of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 $_____ See instructions.		
6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pay or accrue any foreign tax that was disqualified for credit under section 901(m)?		
7	During the tax year, did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pay or accrue foreign taxes to which section 909 applies, or treat foreign taxes that were previously suspended under section 909 as no longer suspended?		
8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only if the tax owner of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is a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Were there any intracompany transactions between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and the CFC or any other branch of the CFC during the tax year, in which the foreign disregarded entity acted as a manufacturing, selling, or purchasing branch?		

Schedule H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 (see instructions)

Important: *Enter the amounts on lines 1 through 6 in functional currency.*

1	Current year net income or (loss) per foreign books of account	1	
2	Total net additions	2	
3	Total net subtractions	3	
4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see instructions) (line 1 plus line 2 minus line 3)	4	
5	DASTM gain or loss (if applicable)	5	
6	Combine lines 4 and 5	6	
7	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 in U.S. dollars (line 6 translated at the average exchange rate determined under section 989(b) and the related regulations (see instructions))	7	
	Enter exchange rate used for line 7 ▶		

Form **8865**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Partnerships

▶ **Attach to your tax return.**

▶ **Information about Form 8865 and its separate instructions is at *www.irs.gov/form8865.***

Information furnished for the foreign partnership's tax year beginning , 2012, and ending , 20

OMB No. 1545-1668

2012

Attachment Sequence No. **118**

Name of person filing this return	**Filer's identifying number**

Filer's address (if you are not filing this form with your tax return)	**A** Category of filer (see **Categories of Filers** in the instructions and check applicable box(es)): 1 ☐ 2 ☐ 3 ☐ 4 ☐ **B** Filer's tax year beginning _____, 20 _____, and ending _____, 20 _____

C Filer's share of liabilities: Nonrecourse $ Qualified nonrecourse financing $ Other $

D If filer is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but not the parent,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parent:

Name	EIN
Address	

E Information about certain other partners (see instructions)

(1) Name	**(2)** Address	**(3)** Identifying number	**(4)** Check applicable box(es)		
			Category 1	Category 2	Constructive owner

F1 Name and address of foreign partnership	**2(a)** EIN (if any) **2(b)** Reference ID number (see instr.) **3** Country under whose laws organized

4 Date of organization	**5** Principal place of business	**6** Principal business activity code number	**7** Principal business activity	**8a** Functional currency	**8b** Exchange rate (see instr.)

G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foreign partnership's tax year:

1 Name, address, and identifying number of agent (if any) in the United States	**2** Check if the foreign partnership must file: ☐ Form 1042 ☐ Form 8804 ☐ Form 1065 or 1065-B Service Center where Form 1065 or 1065-B is filed:
3 Name and address of foreign partnership's agent in country of organization, if any	**4** Name and address of person(s) with custody of the books and records of the foreign partnership, and the location of such books and records, if different

5 Were any special allocations made by the foreign partnership? . . . . . ▶ ☐ **Yes** ☐ **No**

6 Enter the number of Forms 8858,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Disregarded Entities, attached to this return (see instructions) . . . . . ▶

7 How is this partnership classified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it is organized? . . ▶

8 Did the partnership own any separate units within the meaning of Regulations section 1.1503-2(c)(3), (4), or 1.1503(d)-1(b)(4)? . . . . . ▶ ☐ **Yes** ☐ **No**

9 Does this partnership meet **bot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 The partnership's total receipts for the tax year were less than $250,000 and
- The value of the partnership's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tax year was less than $1 million.

If "Yes," **do not** complete Schedules L, M-1, and M-2. . . . . ▶ ☐ **Yes** ☐ **No**

Sign Here Only If You Are Filing This Form Separately and Not With Your Tax Return.	Under penalties of perjury, I declare that I have examined this return, including accompanying schedules and statements,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Declaration of preparer (other than general partner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member) is based on all information of which preparer has any knowledge.
	▶ Signature of general partner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member — ▶ Date

Paid Preparer Use Only	Print/Type preparer's name	Preparer's signature	Date	Check ☐ if self-employed	PTIN
	Firm's name ▶			Firm's EIN ▶	
	Firm's address ▶			Phone no.	

Form 8865 (2012) Page 2

Schedule A **Constructive Ownership of Partnership Interest.** Check the boxes that apply to the filer. If you check box **b,** enter the name, address, and U.S. taxpayer identifying number (if any) of the person(s) whose interest you constructively own. See instructions.

a ☐ Owns a direct interest b ☐ Owns a constructive interest

Name	Address	Identifying number (if any)	Check if foreign person	Check if direct partner

Schedule A-1 **Certain Partners of Foreign Partnership** (see instructions)

Name	Address	Identifying number (if any)	Check if foreign person

Does the partnership have any other foreign person as a direct partner? . . . . . ☐ Yes ☐ No

Schedule A-2 **Affiliation Schedule.** List all partnerships (foreign or domestic) in which the foreign partnership owns a direct interest or indirectly owns a 10% interest.

Name	Address	EIN (if any)	Total ordinary income or loss	Check if foreign partnership

Schedule B **Income Statement—Trade or Business Income**

Caution. Include **only** trade or business income and expenses on lines 1a through 22 below. See the instructions for more information.

Income	1a	Gross receipts or sales	1a				
	b	Less returns and allowances	1b			1c	
	2	Cost of goods sold				2	
	3	Gross profit. Subtract line 2 from line 1c				3	
	4	Ordinary income (loss) from other partnerships, estates, and trusts (attach statement)				4	
	5	Net farm profit (loss) (attach Schedule F (Form 1040))				5	
	6	Net gain (loss) from Form 4797, Part II, line 17 (attach Form 4797)				6	
	7	Other income (loss) (attach statement)				7	
	8	**Total income (loss).** Combine lines 3 through 7				8	
Deductions (see instructions for limitations)	9	Salaries and wages (other than to partners) (less employment credits)				9	
	10	Guaranteed payments to partners				10	
	11	Repairs and maintenance				11	
	12	Bad debts				12	
	13	Rent				13	
	14	Taxes and licenses				14	
	15	Interest				15	
	16a	Depreciation (if required, attach Form 4562)	16a				
	b	Less depreciation reported elsewhere on return	16b			16c	
	17	Depletion (**Do not** deduct oil and gas depletion.)				17	
	18	Retirement plans, etc.				18	
	19	Employee benefit programs				19	
	20	Other deductions (attach statement)				20	
	21	**Total deductions.** Add the amounts shown in the far right column for lines 9 through 20				21	
	22	**Ordinary business income (loss)** from trade or business activities. Subtract line 21 from line 8				22	

Form 8865 (2012) Page 3

Schedule K		Partners' Distributive Share Items			Total amount
Income (Loss)	1	Ordinary business income (loss) (page 2, line 22)		1	
	2	Net rental real estate income (loss) (attach Form 8825)		2	
	3a	Other gross rental income (loss)	3a		
	b	Expenses from other rental activities (attach statement)	3b		
	c	Other net rental income (loss). Subtract line 3b from line 3a		3c	
	4	Guaranteed payments		4	
	5	Interest income		5	
	6	Dividends: a Ordinary dividends		6a	
		b Qualified dividends	6b		
	7	Royalties		7	
	8	Net short-term capital gain (loss) (attach Schedule D (Form 1065))		8	
	9a	Net long-term capital gain (loss) (attach Schedule D (Form 1065))		9a	
	b	Collectibles (28%) gain (loss)	9b		
	c	Unrecaptured section 1250 gain (attach statement)	9c		
	10	Net section 1231 gain (loss) (attach Form 4797)		10	
	11	Other income (loss) (see instructions) Type ▶		11	
Deductions	12	Section 179 deduction (attach Form 4562)		12	
	13a	Contributions		13a	
	b	Investment interest expense		13b	
	c	Section 59(e)(2) expenditures: (1) Type ▶ _____ (2) Amount ▶		13c(2)	
	d	Other deductions (see instructions) Type ▶		13d	
Self-Employment	14a	Net earnings (loss) from self-employment		14a	
	b	Gross farming or fishing income		14b	
	c	Gross nonfarm income		14c	
Credits	15a	Low-income housing credit (section 42(j)(5))		15a	
	b	Low-income housing credit (other)		15b	
	c	Qualified rehabilitation expenditures (rental real estate) (attach Form 3468)		15c	
	d	Other rental real estate credits (see instructions) Type ▶ _____		15d	
	e	Other rental credits (see instructions) Type ▶ _____		15e	
	f	Other credits (see instructions) Type ▶		15f	
Foreign Transactions	16a	Name of country or U.S. possession ▶ _____			
	b	Gross income from all sources		16b	
	c	Gross income sourced at partner level		16c	
		Foreign gross income sourced at partnership level			
	d	Passive category ▶ _____ e General category ▶ _____ f Other (attach statement) ▶		16f	
		Deductions allocated and apportioned at partner level			
	g	Interest expense ▶ _____ h Other ▶		16h	
		Deductions allocated and apportioned at partnership level to foreign source income			
	i	Passive category ▶ _____ j General category ▶ _____ k Other (attach statement) ▶		16k	
	l	Total foreign taxes (check one): ▶ ☐ Paid ☐ Accrued		16l	
	m	Reduction in taxes available for credit (attach statement)		16m	
	n	Other foreign tax information (attach statement)			
Alternative Minimum Tax (AMT) Items	17a	Post-1986 depreciation adjustment		17a	
	b	Adjusted gain or loss		17b	
	c	Depletion (other than oil and gas)		17c	
	d	Oil, gas, and geothermal properties—gross income		17d	
	e	Oil, gas, and geothermal properties—deductions		17e	
	f	Other AMT items (attach statement)		17f	
Other Information	18a	Tax-exempt interest income		18a	
	b	Other tax-exempt income		18b	
	c	Nondeductible expenses		18c	
	19a	Distributions of cash and marketable securities		19a	
	b	Distributions of other property		19b	
	20a	Investment income		20a	
	b	Investment expenses		20b	
	c	Other items and amounts (attach statement)			

Schedule L **Balance Sheets per Books.** (Not required if Item G9, page 1, is answered "Yes.")

	Assets	Beginning of tax year (a)	Beginning of tax year (b)	End of tax year (c)	End of tax year (d)
1	Cash				
2a	Trade notes and accounts receivable				
b	Less allowance for bad debts				
3	Inventories				
4	U.S. government obligations				
5	Tax-exempt securities				
6	Other current assets (attach statement)				
7a	Loans to partners (or persons related to partners)				
b	Mortgage and real estate loans				
8	Other investments (attach statement)				
9a	Buildings and other depreciable assets				
b	Less accumulated depreciation				
10a	Depletable assets				
b	Less accumulated depletion				
11	Land (net of any amortization)				
12a	Intangible assets (amortizable only)				
b	Less accumulated amortization				
13	Other assets (attach statement)				
14	**Total** assets				
	Liabilities and Capital				
15	Accounts payable				
16	Mortgages, notes, bonds payable in less than 1 year				
17	Other current liabilities (attach statement)				
18	All nonrecourse loans				
19a	Loans from partners (or persons related to partners)				
b	Mortgages, notes, bonds payable in 1 year or more				
20	Other liabilities (attach statement)				
21	Partners' capital accounts				
22	**Total** liabilities and capital				

Form 8865 (2012) Page 5

Schedule M **Balance Sheets for Interest Allocation**

		(a) Beginning of tax year	(b) End of tax year
1	Total U.S. assets		
2	Total foreign assets:		
a	Passive category		
b	General category		
c	Other (attach statement)		

Schedule M-1 **Reconciliation of Income (Loss) per Books With Income (Loss) per Return.** (Not required if Item G9, page 1, is answered "Yes.")

1	Net income (loss) per books			6	Income recorded on books this year not included on Schedule K, lines 1 through 11 (itemize):		
2	Income included on Schedule K, lines 1, 2, 3c, 5, 6a, 7, 8, 9a, 10, and 11 not recorded on books this year (itemize):			a	Tax-exempt interest $		
3	Guaranteed payments (other than health insurance)			7	Deductions included on Schedule K, lines 1 through 13d, and 16l not charged against book income this year (itemize):		
4	Expenses recorded on books this year not included on Schedule K, lines 1 through 13d, and 16l (itemize):			a	Depreciation $		
a	Depreciation $			8	Add lines 6 and 7		
b	Travel and entertainment $			9	Income (loss). Subtract line 8 from line 5		
5	Add lines 1 through 4						

Schedule M-2 **Analysis of Partners' Capital Accounts.** (Not required if Item G9, page 1, is answered "Yes.")

1	Balance at beginning of year			6	Distributions: a Cash		
2	Capital contributed: a Cash				b Property		
	b Property			7	Other decreases (itemize):		
3	Net income (loss) per books						
4	Other increases (itemize):			8	Add lines 6 and 7		
				9	Balance at end of year. Subtract line 8 from line 5		
5	Add lines 1 through 4						

Form **8865** (2012)

Schedule N **Transactions Between Controlled Foreign Partnership and Partners or Other Related Entities**

Important: Complete a separate Form 8865 and Schedule N for each controlled foreign partnership. Enter the totals for each type of transaction that occurred between the foreign partnership and the persons listed in columns (a) through (d).

	Transactions of foreign partnership	(a) U.S. person filing this return	(b) Any domestic corporation or partnership controlling or controlled by the U.S. person filing this return	(c) Any other foreign corporation or partnership controlling or controlled by the U.S. person filing this return	(d) Any U.S. person with a 10% or more direct interest in the controlled foreign partnership (other than the U.S. person filing this return)
1	Sales of inventory				
2	Sales of property rights (patents, trademarks, etc.)				
3	Compensation received for technical, managerial, engineering, construction, or like services				
4	Commissions received				
5	Rents, royalties, and license fees received				
6	Distributions received				
7	Interest received				
8	Other				
9	Add lines 1 through 8				
10	Purchases of inventory				
11	Purchases of tangible property other than inventory				
12	Purchases of property rights (patents, trademarks, etc.)				
13	Compensation paid for technical, managerial, engineering, construction, or like services				
14	Commissions paid				
15	Rents,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16	Distributions paid				
17	Interest paid				
18	Other				
19	Add lines 10 through 18				
20	Amounts borrowed (enter the maximum loan balance during the year). See instructions				
21	Amounts loaned (enter the maximum loan balance during the year). See instructions				

[부록 3] 호주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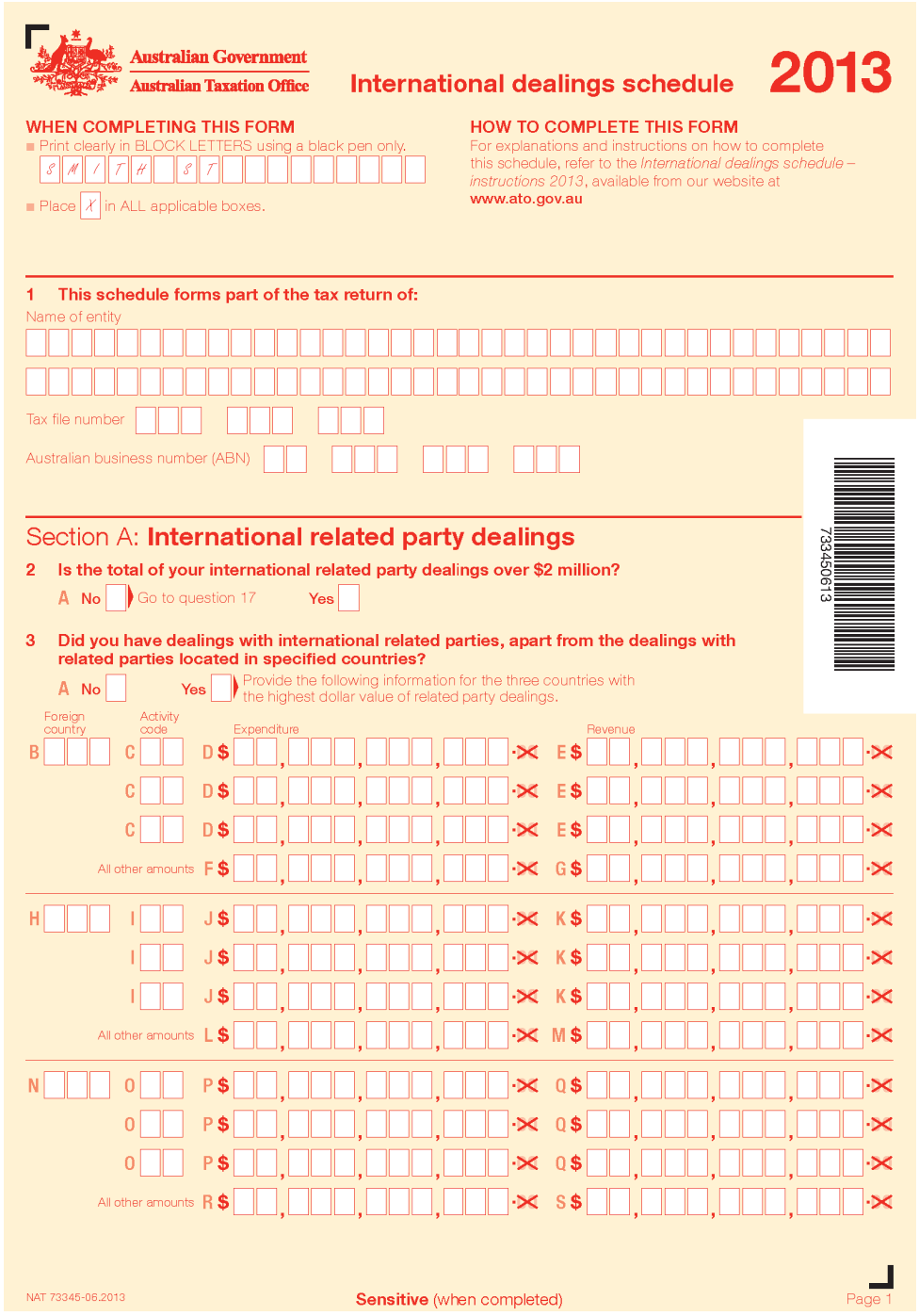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13**

WHEN COMPLETING THIS FORM
- Print clearly in BLOCK LETTERS using a black pen only.
  S M I T H S T
- Place X in ALL applicable boxes.

HOW TO COMPLETE THIS FORM
For explanations and instructions on how to complete this schedule, refer to the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 instructions 2013*, available from our website at **www.ato.gov.au**

1 This schedule forms part of the tax return of:

Name of entity

Tax file number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733450613

Section A: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2 Is the total of your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over $2 million?

A No ▶ Go to question 17 Yes

3 Did you have dealing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apart from the dealings with related parties located in specified countries?

A No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three countries with the highest dollar value of related party dealings.

	Foreign country	Activity code	Expenditure	Revenue
B		C	D $ .00	E $ .00
		C	D $ .00	E $ .00
		C	D $ .00	E $ .00
	All other amounts		F $ .00	G $ .00
H		I	J $ .00	K $ .00
		I	J $ .00	K $ .00
		I	J $ .00	K $ .00
	All other amounts		L $ .00	M $ .00
N		O	P $ .00	Q $ .00
		O	P $ .00	Q $ .00
		O	P $ .00	Q $ .00
	All other amounts		R $ .00	S $ .00

4 Did you have dealing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located in specified countrie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three specified countries with the highest dollar value of related party dealings.

	Specified country	Activity code	Expenditure	Revenue
	B	C	D $	E $
		C	D $	E $
		C	D $	E $
		All other amounts	F $	G $
	H	I	J $	K $
		I	J $	K $
		I	J $	K $
		All other amounts	L $	M $
	N	O	P $	Q $
		O	P $	Q $
		O	P $	Q $
		All other amounts	R $	S $

5 Did you have any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involving tangible property of a revenue nature, including trading stock and raw material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angible property of a revenue nature including trading stock and raw materials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D $	E	F

6 Did you have any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involving royalties or licence fee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6a Royalties

	Deductions	Incom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D $	E	F

6b Licence fees

	Deductions	Incom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D $	E	F

7 Did you have any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involving rent or leasing?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Rent/leasing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D $	E	F

Sensitive (when completed)

8 Did you have any service arrangement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8a Treasury related services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b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ervices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c Insurance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d Reinsurance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f Sales and marketing services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g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h Technical services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i Logistics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j Asset management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8k Other services (specify in label H below)

Expenditure
C $ ☐☐,☐☐☐,☐☐☐,☐☐☐.✕

Revenue
D $ ☐☐,☐☐☐,☐☐☐,☐☐☐.✕

Main pricing methodology — E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 F ☐

Description
H

Sensitive (when completed)

9 Did you have any derivative transaction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9a Derivatives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9b Principal derivative types

Derivative code G1 ☐ Derivative code G2 ☐ Derivative code G3 ☐

9c Did you engage in the trading of derivatives globally through a trading structure in which you shared global profits from these activitie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H No ☐ Yes ☐

10 Did you enter into any debt factoring or securitisation arrangements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10a Debt factoring

	Book value	Consideration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10b Securitisation

	Book value	Consideration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11 Did you have any dealings of a financial nature other than those listed in Questions 9 and 10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terest bearing loans – Average balance	Interest free loans – Average balance
11a Amounts borrowed	I $ ☐☐,☐☐☐,☐☐☐,☐☐☐,☐☐☐.✕	K $ ☐☐,☐☐☐,☐☐☐,☐☐☐,☐☐☐.✕
11b Amounts loaned	I $ ☐☐,☐☐☐,☐☐☐,☐☐☐,☐☐☐.✕	K $ ☐☐,☐☐☐,☐☐☐,☐☐☐,☐☐☐.✕

11c Interest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11d Guarantees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11e Insurance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11f Reinsurance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11g Other financial dealings (specify in label H below)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

Description

H ☐

Sensitive (when completed)

12 Did you have any other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of a revenue nature not reported at questions 5 to 11?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Other (specify in label H below)

	Expenditure	Revenue	Main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E / F	C $ ☐☐,☐☐☐,☐☐☐,☐☐☐.✕	D $ ☐☐,☐☐☐,☐☐☐,☐☐☐.✕	☐☐	☐

H Description

13 Did you dispose of or acquire any tangible/intangible property of a non-revenue (capital) nature to or from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not reported at questions 5 to 11?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13a Tangible property

	Consideration paid	Consideration received	Main capital asset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G / F	C $ ☐☐,☐☐☐,☐☐☐,☐☐☐.✕	D $ ☐☐,☐☐☐,☐☐☐,☐☐☐.✕	☐☐	☐

13b Intangible property

	Consideration paid	Consideration received	Main capital asset pricing methodology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C $ / D $ / G / F	C $ ☐☐,☐☐☐,☐☐☐,☐☐☐.✕	D $ ☐☐,☐☐☐,☐☐☐,☐☐☐.✕	☐☐	☐

14 Did you provide any of the following for no payment or a non-monetary payment, or receive any of the following for a non-monetary payment to/from an international related party?

- **services**
- **assets**
- **liabilities**
- **property – tangible or intangible (eg. intellectual property)**
- **processes**
- **rights or obligation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where applicable)

	Capital		*Revenue*	
	Foreign country	Nature of item	Foreign country	Nature of item
14a No payment	B ☐☐☐	C ☐☐	D ☐☐☐	E ☐☐
14b Non-monetary payment	B ☐☐☐	C ☐☐	D ☐☐☐	E ☐☐

15 Did you provide or receive share-based employee remuneration to or from an international related party?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any international related party recharge amounts you provided or received as part of those arrangements.

	Deductions	Income
Recharge amounts	C $ ☐☐,☐☐☐,☐☐☐,☐☐☐.✕	D $ ☐☐,☐☐☐,☐☐☐,☐☐☐.✕

16 Were you a party to a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for developing, producing or obtaining assets or rights with an international related party?

A No ☐ Yes ☐

7334550813

17 Did a restructuring event(s) occur in the current year involving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or your branch operations?

A No ☐ Go to question 17b Yes ☐

17a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three most material restructuring event(s) involving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or your branch operations.

Restructuring event 1

Entity or branch C ☐ Capital value D ☐ Appendix 7 code E ☐☐ Foreign country G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F ☐

Description H

Was there a contemporaneous professional valuation study or transfer pricing analysis of the restructuring event undertaken?

I No ☐ Yes ☐

Restructuring event 2

Entity or branch C ☐ Capital value D ☐ Appendix 7 code E ☐☐ Foreign country G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F ☐

Description H

Was there a contemporaneous professional valuation study or transfer pricing analysis of the restructuring event undertaken?

I No ☐ Yes ☐

Restructuring event 3

Entity or branch C ☐ Capital value D ☐ Appendix 7 code E ☐☐ Foreign country G ☐☐☐ Percentage of dealings with documentation code F ☐

Description H

Was there a contemporaneous professional valuation study or transfer pricing analysis of the restructuring event undertaken?

I No ☐ Yes ☐

17b During the last three incom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income year) did you revalue any assets following a restructuring event(s) involving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or your branch operations?

B No ☐ Yes ☐

Sensitive (when completed)

18 Do you have any branch operations (including Australian branch operations if you are a non-resident)?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mounts claimed or returned for your internally recorded dealings with your branch operations

		18a Amounts borrowed	18b Amounts loaned
Interest bearing loans	Average balance	I $	I $
	Interest	J $	J $
Interest free loans for TR 2005/11	Average balance	K $	K $

18c Internal trading stock transfers

I $ Trading stock purchase costs

J $ Trading stock sales proceeds

18d Amounts claimed or returned for other internally recorded dealings

I $ Amounts claimed

J $ Amounts returned

Description of amounts claimed/returned

L

If you have more than one type of other internally recorded dealings show each type separately. That is, record an Amount claimed and/or an Amount returned, and a Description for each type of other internally recorded dealing. If you are lodging a paper return provide this additional information as an attachment to the Schedule.

Section B: **Financial arrangements**

19 Did you hold any financing arrangements during the income year where both of the following apply:

- **the arrangement was entered into with international related parties**
- **the characterisation between debt and equity is different under Division 974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ITAA 1997) (debt equity rules) from your treatment for accounting purpose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mounts received	Amounts provided
Average quarterly balance of debt interests		B $	C $
Average quarterly balance of equity interests		D $	E $

20 Are you subject to the Taxation of Financial Arrangements rules contained in Division 230 of the ITAA 1997?

A No ☐ Yes ☐ Specify which tax timing method elections you have made.

Fair value method B ☐

Foreign exchange retranslation method – general election C ☐

Foreign exchange retranslation method – qualifying foreign exchange account(s) election D ☐

Hedging financial arrangements method E ☐

Reliance on financial reports method F ☐

No elections made G ☐

Section C: **Interests in foreign entities**

21 Did you have any interests in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s) or controlled foreign trusts (CFTs)?

A No ☐ Go to question 24

Yes ☐ Specify the number of CFCs and CFTs which you had an interest in at the end of your income year.

	Listed countries	Specified countries	Other unlisted countries
Number of CFCs and CFTs	B ☐☐☐	C ☐☐☐	D ☐☐☐

22 Specify the amounts included in your assessable income under the following sections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TAA 1936).

Section 456 – CFCs attributable income

Listed countries	A $	☐☐,☐☐☐,☐☐☐,☐☐☐.✕
Specified countries	B $	☐☐,☐☐☐,☐☐☐,☐☐☐.✕
Other unlisted countries	C $	☐☐,☐☐☐,☐☐☐,☐☐☐.✕
Total	D $	☐☐,☐☐☐,☐☐☐,☐☐☐.✕

Section 457 – CFCs change of residence

E $ ☐☐,☐☐☐,☐☐☐,☐☐☐.✕

Section 459A – CFCs / CFTs and interposed Australian entities

F $ ☐☐,☐☐☐,☐☐☐,☐☐☐.✕

23 Did you have a CFC that was a resident of an unlisted country that provided a benefit (as defined in section 47A of the ITAA 1936),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you or any of your related entities at any time during the income year?

A No ☐ Yes ☐

24 Do you have foreign branch operations or any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in foreign companies or foreign trusts?

A No ☐ Go to question 27

Yes ☐ Specify the amount of foreign income you derived that is non-assessable under the following sections of the ITAA 1936.

24a Section 23AH – foreign branch income of Australian companies

Listed countries	B $	☐☐,☐☐☐,☐☐☐,☐☐☐.✕
Specified countries	C $	☐☐,☐☐☐,☐☐☐,☐☐☐.✕
Other unlisted countries	D $	☐☐,☐☐☐,☐☐☐,☐☐☐.✕

24b Non deductible expenses incurred in deriving section 23AH non-assessable income

E $ ☐☐,☐☐☐,☐☐☐,☐☐☐.✕

24c Section 23AI – amounts paid out of attributed CFC income

Listed countries	B $	☐☐,☐☐☐,☐☐☐,☐☐☐.✕
Specified countries	C $	☐☐,☐☐☐,☐☐☐,☐☐☐.✕
Other unlisted countries	D $	☐☐,☐☐☐,☐☐☐,☐☐☐.✕

24d Section 23AJ – non-portfolio dividend from foreign companies

	B $	☐☐,☐☐☐,☐☐☐,☐☐☐.✕
	C $	☐☐,☐☐☐,☐☐☐,☐☐☐.✕
	D $	☐☐,☐☐☐,☐☐☐,☐☐☐.✕

Sensitive (when completed)

25 Did you have any debt deductions in earning non-assessable non-exempt foreign income (s25-90 or 230-15(3))?

A No ☐ Yes ☐ Specify the total amount of debt deductions claimed under s25-90 or 230-15(3) ITAA 1997.

Debt deductions in earning non-assessable non-exempt foreign income claimed under s25-90 or 230-15(3) B $ ☐☐,☐☐☐,☐☐☐,☐☐☐ .XX

26 Did you have any capital gains tax (CGT) events in relation to your interest in a foreign company?

A No ☐ Yes ☐ Specify the total amount of the capital gains/losses made in respect of interests in foreign companies and the amounts of any reductions made pursuant to subdivision 768-G of the ITAA 1997.

Capital gain amounts B $ ☐☐,☐☐☐,☐☐☐,☐☐☐ .XX

Capital gain reductions C $ ☐☐,☐☐☐,☐☐☐,☐☐☐ .XX

Capital loss amounts D $ ☐☐,☐☐☐,☐☐☐,☐☐☐ .XX

Capital loss reductions E $ ☐☐,☐☐☐,☐☐☐,☐☐☐ .XX

27 During the last three incom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income year) did you directly or indirectly transfer property, money or services to a non-resident trust, where that non-resident trust was still in existence during that income year?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three transfers with the highest dollar value.

	Transfer amount	Appendix 8 exemption code
Transfer 1	B $ ☐☐,☐☐☐,☐☐☐,☐☐☐ .XX	C ☐
Transfer 2	B $ ☐☐,☐☐☐,☐☐☐,☐☐☐ .XX	C ☐
Transfer 3	B $ ☐☐,☐☐☐,☐☐☐,☐☐☐ .XX	C ☐

28 Were you a beneficiary of a non-resident trust or did you have an interest in, or an entitlement to acquire an interest in, either the income or capital of a non-resident trust during the income year?

A No ☐ Yes ☐

29 Were you a partner in a foreign hybrid limited partnership (FHLP) or shareholder in a foreign hybrid company (FHC)?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Number of FHLPs or FHCs you had an interest in B ☐☐☐

Total amount of your share of net income/profit C $ ☐☐,☐☐☐,☐☐☐,☐☐☐ .XX

Section D: **Thin capitalisation**

30 Did the thin capitalisation rules apply to you?

A No ☐ Go to question 40 Yes ☐

31 Has an Australian resident company elected under subdivision 820-FB of the ITAA 1997 to treat your qualifying Australian branch operations as part of a consolidated group, MEC group or a single company for thin capitalisation purposes?

A No ☐ Yes ☐ Provide the ABN of the entity making that election, then go to question 40.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B ☐☐ ☐☐☐ ☐☐☐ ☐☐☐ Go to question 40

32 What was your entity type at the end of the income year?

A Code ☐

33 Did you change your entity status from 'general' to 'financial' during the income year?

A No ☐ Yes ☐

34 What method did you use to calculate your average values?

A Code

35 General information – *to be completed by all thin capitalisation entities*

Debt deductions A $,,, .

Debt deductions on debt from related non-residents B $,,, .

Amount of debt deduction disallowed C $,,, .

Adjusted average debt D $,,, .

36 Were you an authorised deposit taking institution (ADI) for the income year?
Answer 'Yes' if you entered code 7 or 8 at Question 32 label A.

A No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where applicable

All ADI entities

(Adjusted) average equity capital
B $,,, .

Safe harbour capital amount
C $,,, .

Equity capital shortfall amount
D $,,, .

Outward investing ADI

Average value of risk weighted assets
E $,,, .

Equity capital attributable to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s)
F $,,, .

Outward investing ADI – *continued*

Average value of risk weighted assets attributable to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s)
G $,,, .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equity
H $,,, .

Tier 1 prudential capital deductions
I $,,, .

Inward investing ADI

Average of risk weighted assets attributable to Australian permanent establishment(s)
J $,,, .

Average value of dotation capital
K $,,, .

37 Were you a non-authorised deposit taking institution (non-ADI) for the income year?
Answer 'Yes' if you entered code 1, 2, 3, 4, 5 or 6 at Question 32, label A.

A No Yes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where applicable

All non-ADI entities

Average value of assets
B $,,, .

Asset revaluation amount for thin capitalisation purposes
C $,,, .

Safe harbour debt amount
D $,,, .

Excess debt amount
E $,,, .

Average value of non-debt liabilities
F $,,, .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debt
G $,,, .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equity
H $,,, .

All non-ADI entities – *continued*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excess amount
I $,,, .

Average value of excluded equity interests
J $,,, .

Financial entity

Average zero capital amount
K $,,, .

Average on-lent amount
L $,,, .

Outward investing entity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equity
M $,,, .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debt
N $,,, .

38 Did you rely on arm's length tests?

A No Yes Provide your arm's length debt (non-ADI) or capital (ADI) amount

B $,,, .

Sensitive (when completed)

39 Did you rely on worldwide gearing debt/capital tests?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where applicable

ADI

Worldwide group capital ratio

B ☐·☐☐☐☐

Worldwide capital amount

C $ ☐☐,☐☐☐,☐☐☐,☐☐☐·00

Non-ADI

Worldwide debt

D $ ☐☐,☐☐☐,☐☐☐,☐☐☐·00

Worldwide equity

E $ ☐☐,☐☐☐,☐☐☐,☐☐☐·00

Worldwide gearing debt amount

F $ ☐☐,☐☐☐,☐☐☐,☐☐☐·00

Section E: **Financial Services Entities**

40 Are you a foreign bank or other qualifying financial entity that has not elected out of Part IIIB of the ITAA 1936?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verage quarterly notional amount taken to be borrowed under section 160ZZZ

B $ ☐☐,☐☐☐,☐☐☐,☐☐☐·00

Notional amount of interest taken to be paid under section 160ZZZA (excluding amounts attributable to OB activities of offshore banking units (OBUs))

C $ ☐☐,☐☐☐,☐☐☐,☐☐☐·00

Notional amount of interest taken to be paid under section 160ZZZA attributable to OB activities of OBUs

D $ ☐☐,☐☐☐,☐☐☐,☐☐☐·00

Amount of section 160ZZZJ withholding tax paid on notional interest amount

E $ ☐☐,☐☐☐,☐☐☐,☐☐☐·00

41 Were you an offshore banking unit (OBU) or the head company of a consolidated group that included an OBU?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41a Borrowing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b Lending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c Guarantee-type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d Trading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e Eligible contract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f Investment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 Were you an offshore banking unit (OBU) or the head company of a consolidated group that included an OBU? *– continued*

41g Advisory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h Hedging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i Other – as declared by regulation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j General OB deduction and apportionable OB deductions

C $,,,, .00

41m Total assessable OB Income / less Total OB deductions

Assessable OB income

B $,,,, .00

Net OB income/loss

C $,,,, .00 /

Assessable OB income from related parties

D $,,,, .00

41n Eligible fraction of foreign income tax on OB income claimed under division 770

E $,,,, .00

Section F: **Miscellaneous**

42 Did you have a Conduit Foreign Income balance and/or distribute amounts of Conduit Foreign Income during the income year?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Balance of conduit foreign income

B $ ☐☐,☐☐☐,☐☐☐,☐☐☐.✕ / ☐

Conduit foreign income distributed during income year

C $ ☐☐,☐☐☐,☐☐☐,☐☐☐.✕

43 Do you have an unfranked non portfolio dividend account (section 46FB ITAA 1936)?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Balance of unfranked non-portfolio dividend account at year end

B $ ☐☐,☐☐☐,☐☐☐,☐☐☐.✕ / Code ☐

44 Did you pay amounts of interest exempt from withholding tax during the income year?

A No ☐ Yes ☐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nterest paid to financial institution exempt from withholding under a DTA

B $ ☐☐,☐☐☐,☐☐☐,☐☐☐.✕

DTA country

C ☐☐☐

Section 128F exempt interest paid

D $ ☐☐,☐☐☐,☐☐☐,☐☐☐.✕

Section 128FA exempt interest paid

E $ ☐☐,☐☐☐,☐☐☐,☐☐☐.✕

Section G: **Taxpayer's declaration**

If the schedule is not lodged with the income tax return you are required to sign and date the schedule.

Important

Before making this declaration check to ensure that all the information required has been provided on this form and any attachments to this form, and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correct in every detail. If you are in doubt about any aspect of the tax return, place all the facts before the ATO. The income tax law imposes heavy penalties for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

Declaration: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Signature

Date Day ☐☐ / Month ☐☐ / Year ☐☐☐☐

Contact name

Daytime contact number (include area code)

세법연구 13-05

법인의 국제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주요국의 서식 비교 연구

2013년 9월 23일 인쇄
2013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이혜원 · 유현영 · 최정욱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58-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